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 2026년도 예산안 개요¹⁾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25.10.30)를 통하여 '25년도 대비 3조 3,915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채무증가 없이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되 '동행·안전·매력' 3대 중점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보도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26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시민의 삶을 바꿔나가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①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한 동행서울, ②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③활력과 성장을 담은 매력서울, ④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온기예산 등 4개 핵심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으로 보도함

- 서울시의 '26년도 예산안은 51조 5,059억원으로 중복계상 되는 회계간 전·출입(5조 4,512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6조 547억원이며
 - 순계예산중 자치구 지원(7조 1,187억원), 교육청 지원(4조 126억원), 채무상환(1조 9,323억원), 기금전출금(3,184억원), 반환금(4,471억원)을 제외한 실질집행규모는 32조 2,253억원임

 - 분야별 집행규모중 ①사회복지분야는 '25년도 본예산(17조 4,619억원)보다 7.2%(1조 2,595억원) 증가한 18조 7,214억원, ②공원환경 분야는 '25년도 본예산(2조 4,700억원)보다 3.7%, 915억원 증가한 2조 5,615억원을 편성하고, ③도로·교통분야는 '25년도 본예산(2조 1,868억원)보다 10.7%(2,344억원) 증가한 2조 4,212억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④도시안전 분야는 '25년도 본예산(1조 7,792억원)보다 △8.6%, △1,527억원 감소한 1조 6,265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시의 '26년도 예산안은 51조 5,059억 8,600만원으로 '25년도 본예산(48조 1,144억 5,500만원)과 비교하면 7.0%, 3조 3,915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이나, 금년도 최종예산(52조 476억 5,400만원)과 비교하면, △7.6%, △3조 9,331억 9,9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표 1-1〉 2026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	산	51,505,986	48,114,455	3,391,531		7.0		
	일반회계	36,894,301	34,418,927	2,475,373		7.2		
	특별회계	14,611,685	13,695,527	916,157		6.7		

※ 자료근거 : 의안번호 336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기금운용계획안은 3조 8,274억 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 당시 운용계획(4조 1,789억 1,300만원)보다 △8.4%, △3,515억 7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하는 것임

〈표 1-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기준)	증	감	증	감	률
21개	기금	3,827,406	4,178,913	△351,507				△8.4
29개	계정							

※ 자료근거 : 의안번호 3368,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25.10.31)

3. 예산안 개요

(1)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

□ '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51조 5,059억 8,600만 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36조 8,943억원,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14조 6,116억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표 1-3〉 2026년도 예산안 회계별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계		51,505,986	52,047,654	△541,667	△1.0
일반회계		36,894,301	37,697,507	△803,205	△2.1
특별회계		14,611,685	14,350,146	261,538	1.8
	공기업특별회계	2,120,003	2,241,506	△121,503	△5.4
	수도사업특별회계	1,100,000	1,116,189	△16,189	△1.5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20,003	1,125,317	△105,313	△9.4
	기타특별회계	12,491,681	12,108,640	383,041	3.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285,990	1,804,745	481,244	26.7
	교통사업특별회계	2,027,704	1,895,465	132,238	7.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9,647	81,926	227,720	278.0
	주택사업특별회계	2,257,727	3,001,622	△743,894	△24.8
	도시개발특별회계	1,817,015	2,078,333	△261,317	△12.6
	균형발전특별회계	495,707	192,553	303,154	157.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547	21,274	△9,727	△4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92,816	2,002,159	190,657	9.5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011	29,382	△1,371	△4.7
	소방특별회계	1,065,513	1,001,175	64,337	6.4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조 8,943억 1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37조 6,975억 700만원)보다 △2.1%, △8,032억 5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26조 3,543억 1,9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24조 9,125억 2,800만원)보다 5.8%, 1조 4,417억 9,1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하고, **세외수입**은 2조 296억 5,2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1조 7,180억 7,200만원)보다 18.1%, 3,115억 8,000만원 증액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교부세**는 '25년도 최종예산(930억 1,400만원)보다 △59.6%, △554억 4,000만원 감액된 375억 7,400만원으로 편성요청하고, **보조금**은 7조 9,753억 6,7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9조 1,813억 8,900만원)보다 △13.1%, △1조 2,060억 2,200만원 감액 편성요청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년도 최종예산(1조 6,425억 200만원)보다 △80.9%, △1조 3,293억 1,400만원 감액된 3,13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26년도 1,842억원으로 편성하여 '25년도 최종예산(1,500억) 대비 22.8%, 342억 증액 편성한 것임

〈표 1-4〉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36,894,301	37,697,507	△803,205	△2.1
지방세수입	26,354,319	24,912,528	1,441,791	5.8
세외수입	2,029,652	1,718,072	311,580	18.1
지방교부세	37,574	93,014	△55,440	△59.6
보조금	7,975,367	9,181,389	△1,206,022	△13.1
지방채	184,200	150,000	34,200	22.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3,188	1,642,502	△1,329,314	△80.9

2)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2개)와 기타특별회계(10개)에 대한 '26년도 세입예산은 '25년도 최종예산(14조 3,501억 4,600만원)보다 1.8%, 2,615억 3,800만원 증액된 14조 6,116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외수입**은 3조 9,2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25년도 최종예산(3조 7,765억 700만원)보다 3.8%, 1,448억 3,300만원 증액 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는 74억원을 편성하여 '25년도 최종예산(183억원)보다 △59.6%, △109억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 **보조금**은 2조 2,032억 7,5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2조 702억 7,700만원)보다 6.4%, 1,329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 **지방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1조 3,431억 1,700만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893억 4,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959억 5,7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1,025억 9,500만원)에서 각각 지방채를 발행하여 '25년도 최종예산(1조 7,838억 5,800만원)보다 △7.1%, △1,263억 4,800만원 감액하여 1조 6,575억 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조 8,221억 5,9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6조 7,012억 400만원)보다 1.8%, 1,209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1-5〉 202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4,611,685	14,350,146	261,538		1.8
	세 외 수 입	3,921,340	3,776,507	144,833		3.8
	지 방 교 부 세	7,400	18,300	△10,900		△59.6
	국 고 보 조 금 등	2,203,275	2,070,277	132,998		6.4
	지 방 채	1,657,509	1,783,858	△126,348		△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22,159	6,701,204	120,955		1.8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6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51조 5,059억 8,600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5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2.1\%$, $\Delta 8,032$ 억 500만원 감액된 36조 8,943억 1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 특별회계는 '25년도 최종예산 대비 1.8%, 2,615억 3,800만원 증액된 14조 6,116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 회계간 전출입은 5조 4,512억 6,181만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조 4,075억 6,991만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36억 9,190만원 전출되며
- 법정 의무경비는 13조 8,293억 7,952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자치구 지원은 7조 1,187억 4,660만원으로 일반회계 7조 709억 4,907만원과 특별회계 477억 9,753만원,
 - 교육청 지원은 4조 126억 3,147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88억 5,311만원과 특별회계 37억 7,836만원,
 - 채무상환은 1조 9,323억 3,678만원으로 일반회계 674억 421만원과 특별회계 1조 8,649억 3,257만원,
 - 반환금 등은 4,471억 6,807만원으로 일반회계 4,124억 1,276만원과 특별회계 347억 5,531만원,
 - 기금전출금은 3,184억 9,66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편성한 것임
- 총계예산 중 회계간 전·출입과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32조 2,253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조 6,086억 1,500만원, 특별회계 12조 6,167억 2,900만원임

〈표 1-6〉 2026년도 총계·순계·실집행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규 모	51,505,986	52,047,654	△541,667	△1.0
일 반 회 계	36,894,301	37,697,507	△803,205	△2.1
특 별 회 계	14,611,685	14,350,146	261,538	1.8

회 계 간 전 출·입 차 감	회 계 간 전 출·입 :	5조 4,512억 6,181만원	(기금전출 제외)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5조 4,075억 6,991만원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436억 9,190만원	

순 계 규 모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순 계 규 모	46,054,724	47,319,083	△1,264,358	△2.7
일 반 회 계	31,486,731	33,011,189	△1,524,457	△4.6
특 별 회 계	14,567,993	14,307,893	260,099	1.8

법 의 경 차 정 무 비 감	법 정 의 무 경 비 :	13조 8,293억 7,952만원		
	일 반 회 계	11조 8,781억 1,575만원	특 별 회 계	1조 9,512억 6,377만원
	- 자치구 지원	7조 709억 4,907만원	- 자치구 지원	477억 9,753만원
	- 교육청 지원	4조 88억 5,311만원	- 교육청 지원	37억 7,836만원
	- 채 무 상 환	674억 421만원	- 채 무 상 환	1조 8,649억 3,257만원
	- 기금전출금	3,184억 9,660만원		
	- 반 환 금 등	4,124억 1,276만원	- 반 환 금 등	347억 5,531만원

실 집 행 규 모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실 집 행 규 모	32,225,345	33,822,685	△1,597,340	△4.7
일 반 회 계	19,608,615	21,172,280	△1,563,664	△7.4
특 별 회 계	12,616,729	12,650,404	△33,675	△0.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042 ('25.11.13) 재구성

2) 예산안 자원 배분 (부문별·성질별)

- '26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51조 5,059억 8,600만원으로 이 중 행정 운영경비(2조 3,207억원), 재무활동(9조 1,138억원), 교육청 지원(4조 126억원) 및 자치구 지원(7조 1,187억원) 경비를 차감한 **사업비 편성 규모**는 28조 9,400억 5,7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30조 3,129억 100만원) 대비 △4.5%, △1조 3,728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편성규모**는 사회복지 18조 7,214억 3,300만원(36.3%), 공원·환경 2조 5,615억 9,000만원(5.0%), 도로·교통 2조 4,212억 3,700만원(4.7%), 도시안전 1조 6,265억 2,000만원(3.2%), 문화관광 1조 115억 8,600만원(2.0%), 일반행정 1조 695억 1,100만원(2.1%), 산업경제 9,254억 9,000만원(1.8%) 등으로 확인됨

〈표 1-7〉 2026년도 부문별 예산안(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51,505,986	100.0	52,047,654	100.0	△541,667		△1.0
행	정 운영 경비	2,320,707	4.5	2,222,518	4.3	98,189		4.4
재	무 활동	9,113,843	17.7	8,663,393	16.6	450,449		5.2
교	육 청 지원	4,012,631	7.8	4,013,000	7.7	△369		△0.0
자	치 구 지원	7,118,746	13.8	6,835,840	13.1	282,906		4.1
사	업 비	28,940,057	56.2	30,312,901	58.2	△1,372,843		△4.5
	사 회 복 지	18,721,433	36.3	17,808,233	34.2	913,199		5.1
	공 원 · 환 경	2,561,590	5.0	2,566,317	4.9	△4,727		△0.2
	도 로 · 교 통	2,421,237	4.7	2,349,507	4.5	71,729		3.1
	도 시 계 획 및 주 택 획 령 비	430,887	0.8	478,269	0.9	△47,381		△9.9
	산 업 경 제	925,490	1.8	926,795	1.8	△1,305		△0.1
	도 시 안 전	1,626,520	3.2	1,972,595	3.8	△346,074		△17.5
	문 화 관 광	1,011,586	2.0	1,040,207	2.0	△28,620		△2.8
	일 반 행 정	1,069,511	2.1	3,022,234	5.8	△1,952,722		△64.6
	예 비 비	171,800	0.3	148,741	0.3	23,058		15.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042 ('25.11.13) 재구성

〈표 1-8〉 2026년도 성질별 예산안(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본예산)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계	51,505,986	100.0	52,047,654	100.0	△541,667		△1.0
	인 건 비	1,895,842	3.7	1,825,407	3.5	70,435		3.9
	물 건 비	1,663,452	3.2	1,653,229	3.2	10,223		0.6
	경 상 이 전	28,739,403	55.8	29,147,709	56.0	△408,305		△1.4
	자 본 지 출	5,786,737	11.2	6,193,823	11.9	△407,086		△6.6
	용자 및 출자	271,764	0.5	472,179	0.9	△200,414		△42.4
	보 전 재 원	1,685,429	3.3	1,397,339	2.7	288,089		20.6
	내 부 거 래	11,159,807	21.7	11,016,407	21.2	143,399		1.3
	예비비 및 기타	303,548	0.6	341,556	0.7	△38,008		△11.1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21~22 재구성

4.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서울시는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 29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가 '26년도에 운용할 21개 기금(29개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3조 8,274억 600만원으로 '25년도(4조 1,789억 1,300만원)보다 △8.4%, △3,515억 700만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제출한 바, 금년도 최종운용계획(5조 5,488억 2,100만원) 보다는 △31.0%, △1조 7,214억 1,500만원 감액하여 운용계획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1-9〉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계 획 안)	2025년도 (본예산기준)	증감	증감률
21개 기금 (29개 계정)	3,827,406	4,178,913	△351,507	△8.4

- 21개 기금의 '26년도말 조성액은 10조 4,744억 3,600만원으로 계획된 바, '25년도말 조성액(9조 2,724억 7,400만원)보다 12.9%, 1조 2,019억 6,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표 1-10〉 2026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5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수입	지출			
합 계	9,272,474	2,558,222	1,356,259	10,474,436	1,201,962	1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713,328	1,309,124	264,587	8,757,865	1,044,536	13.5
통합계정	6,999,913	1,288,143	189,187	8,098,869	1,098,955	15.7
재정안정화계정	713,415	20,980	75,399	658,996	△54,419	△7.6
중소기업육성기금	148,784	272,846	351,267	70,363	△78,420	△52.7
융자계정	76,258	204,682	276,218	4,722	△71,536	△93.8
투자계정	11,452	56,063	66,975	539	△10,912	△95.2
사회적경제계정	61,074	12,100	8,072	65,101	4,027	6.6
식품진흥기금	62,331	8,432	3,803	66,960	4,628	7.4
기후대응기금	20,791	17,484	29,662	8,612	△12,178	△58.5
도로굴착복구기금	20,418	47,289	40,347	27,360	6,941	34
양성평등가족기금	25,767	1,251	944	26,074	306	1.1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077	35,171	35,836	9,412	△665	△6.6
사회복지기금	52,072	8,318	15,742	44,648	△7,423	△14.2
노인복지계정	12,109	444	449	12,104	△5	△0.04
장애인복지계정	16,630	1,971	3,395	15,206	△1,423	△8.5
자활계정	9,026	621	1,002	8,645	△381	△4.2
주거지원계정	14,306	5,281	10,895	8,692	△5,614	△39.2
체육진흥기금	55,097	9,303	9,749	54,651	△446	△0.8
재난관리기금	960,452	491,648	388,591	1,063,509	103,057	10.7
재난계정	834,984	430,626	382,492	883,118	48,134	5.7
구호계정	125,468	61,021	6,098	180,390	54,922	43.7
남부교류협력및동해지역발전기금	32,478	1,163	1,681	31,959	△518	△1.6
지역교류협력기금	1,224	6,877	7,119	982	△242	△19.8
국제개발협력기금	2,950	4,558	3,758	3,750	800	27.1
도시재생기금	76,072	34,441	8,654	101,859	25,787	33.9
관광진흥기금	7,245	234	355	7,125	△120	△1.6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347	41	355	1,033	△313	△23.3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898	193	0	6,092	193	3.2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082	20,217	19,007	7,292	1,210	19.9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5,913	13,000	0	88,913	13,000	17.1
고향사랑기금	581	333	186	728	146	25.1
공공시설등설치기금	740	83,598	0	84,338	83,598	11,294.2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	63	1,042	1,000	105	42	66.8
주택진흥기금	0	191,886	173,962	17,923	17,923	-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p.9) 재구성

Ⅱ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게 됨
- '26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항,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 관련 사항, 제5조 명시이월 사업 관련 사항, 제6조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항, 제9조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예산총액**은 51조 5,059억 8,6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는 1조 1,0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한 바,
 - 일시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예외로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6년도 일시차입한도는 1조 1,00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원, 특별회계 1,000억원을 설정한 것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보조적 수단임

-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예산편성 시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바, '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 제4조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26년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1,842억원, 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조 3,431억 1,700만원, ②도시개발특별회계 1,025억 9,500만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959억 5,700억원, ④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93억 4,000만원, ⑤균형발전특별회계 26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총 1조 8,417억 90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발행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26년도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1조 6,536억원으로 산정하여 지난 7월

15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별도 한도액(1조 1,775억 5,800만원)은 ①도시철도공채 발행액(5,946억 8,700만원)과 ②'26년 차환채 발행액(5,828억 7,100만원)이 해당되는 바,
- '26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기본한도액(1조 6,536억원)과 별도 한도액(1조 1,775억 5,800만원)을 합한 2조 8,311억 5,800만원으로 예산총칙중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1조 8,417억 9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총 한도액 내에서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표 2-1〉 2026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발행한도액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 방 채 발행규모	총 발행규모		① 1,841,709
		일 반 회 계	184,200
		특 별 회 계	1,657,509
		기 금	-
지 방 채 발 행 한 도 액	총 한도액		② 2,831,158
		기 본 한 도 액	1,653,600
		별 도 한 도 액	1,177,558
		지 역 개 발 채 권 발 행 액	-
		도 시 철 도 공 채 발 행 액	594,687
		'26년 차환채 발행액(50%)	582,871
		지 역 일 자 리 사 업 (투 자 사 업)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
한도내 추가발행 여력		②-①	989,448

- **공채발행 및 차입금** 중 일반회계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1,500억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지난 '21년 7월, 재난안전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채 1,500억원을 차환하려는 것임
- 금년도에도 지난 '20년 7월, 재난안전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1,500억원)를 차환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1,500억원)를 발행한 바 있어, '26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 원금 잔액(1,500억원)을 차환하려는 것으로 금번 차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난관리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 차환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은 별도의 회계로 운용되어 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기금의 재원으로 상환하여야 하나, 관련 법령은 동 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원금 상환과 이자지급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한 자원(전입금)으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차환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를 총칙에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A〉 2026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세부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계정)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지방채 편성액	세부산출내역
총 계					1,841,709	
일 반 회 계					184,200	
1	일 반 회 계	경 제 실	창업정책과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차환)	24,000	지방채 : 24,000
2		시민건강국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차환)	8,200	지방채 : 8,200
3		정원도시국	자연생태과	단절된 녹지축 연결 (양재고개) (차환)	2,000	지방채 : 2,000
4		재난안전실	재 난 안 전 정 책 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차환)	150,000	지방채 : 150,000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343,117	
5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총 무 과	도시철도공채	594,687	매출공채
6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총 무 과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172,529	지방채 : 172,529
7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190,000	지방채 : 190,000
8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총 무 과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차환)	81,900	지방채 : 81,900
9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총 무 과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253,000	지방채 : 253,000
10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교체(국비) (차환)	51,000	지방채 : 51,0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95,957	
11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도정계정)	주 택 실	임대정책과	임대주택공급(주택기금) (차환)	58,957	지방채 : 58,957
12		주 택 실	임대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차환)	37,000	지방채 : 37,000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89,340	
13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교 통 실	교통정책과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차환)	81,000	지방채 : 81,000
14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1교~녹천교) (차환)	8,340	지방채 : 8,340

〈표 2-2B〉 2026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세부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계정)	실·본부·국	부서	세부사업	지방채 편성액	세부산출내역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02,595	
15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구간)	46,000	자체 : 3,600 지방채 : 46,000
16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29,000	자체 : 3,504 지방채 : 29,000
17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차환)	5,150	지방채 : 5,150
18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 (월계1교~녹천교) (차환)	1,690	지방채 : 1,690
19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안양교 확장 (차환)	1,450	지방채 : 1,450
20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차환)	3,025	지방채 : 3,025
21		물 순환 안전국	치수안전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차환)	5,000	지방채 : 5,000
22		물 순환 안전국	치수안전과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차환)	3,000	지방채 : 3,000
23		물 순환 안전국	치수안전과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차환)	2,000,000	지방채 : 2,000
24	민생노동국	농수산 유통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280,000	국비 : 4,710 자체 : 4,710 지방채 : 6,280	
군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6,500	
25	군 형 발 전 특 별 회 계	문화본부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차환)	14,000	지방채 : 14,000
26		평생교육국	청소년 정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차환)	2,500	지방채 : 2,500
27		균형발전 본부	균형발전 정책과	시가지권역 구릉지일대 교통편의개선 (차환)	7,000	지방채 : 7,000
28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차환)	3,000	지방채 : 3,000

- 제5조 **명시이월**은 세부사업기준 총 85개 사업, 2,817억 1,600만원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음
- 제7조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일반회계 예비비는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①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36조 8,943억원)의 0.3%, 1,244억 6,500만원, ②목적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규모는 1,444억 6,5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예비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3%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된 '25년도 1~3분기까지의 예비비 지출액 등을 고려할 때 '26년도에 편성 요청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적정규모로 사료됨
- 제8조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최근 수년간 예산의 이용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음
 - '26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명시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3개 사유에 대하여 지방의회로부터 미리 의결을 얻어 해당 사유 발생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 제9조 **간주처리**는 '26년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25년도에는 7차에 걸쳐 국고보조금 등 104건, 1조 2,558억 2,100만원을 간주 처리한 바 있음

2.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세입예산의 특징

- '26년도 예산안은 '25년도 최종예산(52조 476억 5,400만원)보다 △1.0%, △5,416억 6,700만원 감액된 51조 5,059억 8,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5년도 최종예산(37조 6,975억 700만원)보다 △2.1%, △8,032억 600만원이 감액된 36조 8,943억 10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5년도 최종예산(14조 3,501억 4,600만원)보다 1.8%, 2,6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조 6,116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 2026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합 계	51,505,986	52,047,654	△541,667	△1.0
일 반 회 계	36,894,301	37,697,507	△803,205	△2.1
특 별 회 계	14,611,685	14,350,146	261,539	1.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13

- 세입예산은 세출수요증가, 물가의 자연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증액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26년도 예산안은 '25년도 최종예산보다 △1.0%, △5,416억 6,7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 지방세 수입(5.8% 증) 및 세외수입(18.1% 증) 등 자체 재원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59.6% 감), 보조금(△13.1% 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80.9% 감) 등에서 대규모 감액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총계는 금년도 보다 △2.1% 감소하였음

- 다만, '25년도 최종예산은 '24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2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통보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2025년도 중 세입예산에 경정하여 당초예산보다 최종예산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 '26년도 세입예산을 전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5,416억 6,700만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7.0%, 3조 3,915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2) 세입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

-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6조 8,943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7조 6,975억 700만원)보다 $\Delta 2.1\%$, $\Delta 8,032$ 억 5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세입재원별 구성 내역을 검토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25년도 최종예산(24조 9,125억 2,800만원)보다 5.8% , 1조 4,417억 9,100만원 증액된 26조 3,543억 1,900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25년도 최종예산(1조 7,180억 7,200만원)보다 18.1% , 3,115억 7,900만원 증액된 2조 296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25년도 최종예산(930억 1,400만원)보다 $\Delta 59.6\%$, $\Delta 554$ 억 4,000만원 감액된 37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국고보조금등)**은 '25년도 최종예산(9조 1,813억 8,900만원)보다 $\Delta 13.1\%$, $\Delta 1$ 조 2,060억 2,200만원 감액된 7조 9,753억 6,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지방채**의 경우, '26년도 1,842억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1,500억원) 대비 22.8% , 34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년도 최종예산(1조 6,425억 200만원)보다 $\Delta 80.9\%$, $\Delta 1$ 조 3,293억 1,400만원 감액된 3,13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4〉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예산안)	2025년도(최종)	증 감	증감률
총	계	36,894,301	37,697,507	△803,205	△2.1
지	방 세 수 입	26,354,319	24,912,528	1,441,791	5.8
	보 통 세	23,948,089	22,633,067	1,315,022	5.8
	취 득 세	6,195,538	5,600,501	595,037	10.6
	주 민 세	863,540	824,014	39,526	4.8
	재 산 세	3,940,616	3,682,864	257,752	7.0
	자 동 차 세	1,117,161	1,116,638	523	0.0
	레 저 세	100,004	105,158	△5,154	△4.9
	담 배 소 비 세	544,481	561,574	△17,093	△3.0
	지 방 소 비 세	2,807,527	2,909,211	△101,684	△3.5
	지 방 소 득 세	8,379,222	7,833,107	546,115	7.0
	목 적 세	2,176,630	2,052,629	124,001	6.0
	지역자원시설세	310,430	294,266	16,164	5.5
	지 방 교 육 세	1,866,200	1,758,363	107,837	6.1
	지 난 년 도 수 입	229,600	226,832	2,768	1.2
세	외 수 입	2,029,652	1,718,072	311,579	18.1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64,692	863,096	101,596	11.8
	재 산 임 대 수 입	197,700	202,323	△4,622	△2.3
	사 용 료 수 입	156,157	153,216	2,940	1.9
	수 수 료 수 입	36,586	38,820	△2,233	△5.8
	사 업 수 입	486,235	370,527	115,708	31.2
	징수교부금수입	13,885	11,506	2,379	20.7
	이 자 수 입	74,126	86,702	△12,576	△14.5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033,312	807,206	226,106	28.0
	재 산 매 각 수 입	594,667	379,746	214,920	56.6
	자치단체간부담금	14,697	15,515	△818	△5.3
	보 조 금 반 환 수 입	290,412	275,272	15,140	5.5
	기 타 수 입	133,534	136,671	△3,136	△2.3
	지 방 행 정 제 재 · 부 과 금	8,612	9,123	△511	△5.6
	과 징 금	711	669	42	6.3
	변 상 금	5,512	5,861	△348	△5.9
	과 태 료	2,305	2,442	△136	△5.6
	부 담 금	82	150	△67	△44.7
	지 난 연 도 수 입	23,035	38,645	△15,610	△40.4
지	방 교 부 세	37,574	93,014	△55,440	△59.6
	보 통 교 부 세	-	51,802	△51,802	△100.0
	특 별 교 부 세	-	4,573	△4,573	-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7,574	36,639	934	2.6
보	조 금	7,975,367	9,181,389	△1,206,022	△13.1
	국 고 보 조 금	7,567,664	8,793,497	△1,225,833	△13.9
	지 방 행 정 특 별 기 보 조 금	90,317	74,179	16,137	21.8
	기 금	317,385	313,712	3,673	1.2
지	방 채	184,200	150,000	34,200	22.8
보	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3,188	1,642,502	△1,329,314	△80.9
	보 전 수 입 등	61,876	1,041,023	△979,146	△94.1
	내 부 거 래	251,311	601,478	△350,167	△58.2

1)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세입재원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지방세 수입**의 세입예산안은 26조 3,543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4조 9,125억 원 대비 5.8%, 1조 4,41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취득세(증 5,950억 원, 5조 6,005억 원 → 6조 1,955억 원)와 재산세(증 2,577억 원, 3조 6,828억 원 → 3조 9,406억 원), 지방소득세(증 5,461억 원, 7조 8,331억 원 → 8조 3,792억 원)를 증 추계하여 편성요청한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6년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년도 3.2%에서 4.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 세계경제전망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26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0.4%p 상향 조정한 1.8%로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의 주요 세수기반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해당 분석내역에는 정부의 세제개편 효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대출 금리의 소폭 완화로, 취득세 수입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권내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며, 부동산 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취득세 등의 세수가 예상보다 감수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추계에서 수·지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주기별 세입 추계를 통해 발생가능한 수·지 불균형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 2026년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36,894,301	37,697,507	△803,205	△2.1
지방세수입	26,354,319	24,912,528	1,441,791	5.8
보통세	23,948,089	22,633,067	1,315,022	5.8
취득세	6,195,538	5,600,501	595,037	10.6
주민세	863,540	824,014	39,526	4.8
재산세	3,940,616	3,682,864	257,752	7.0
자동차세	1,117,161	1,116,638	523	0
레저세	100,004	105,158	△5,154	△4.9
담배소비세	544,481	561,574	△17,093	△3.0
지방소비세	2,807,527	2,909,211	△101,684	△3.5
지방소득세	8,379,222	7,833,107	546,115	7.0
목적세	2,176,630	2,052,629	124,001	6
지역자원시설세	310,430	294,266	16,164	5.5
지방교육세	1,866,200	1,758,363	107,837	6.1
지난년도수입	229,600	226,832	2,768	1.2

- 취득세는 '25년도 최종예산(5조 6,005억 100만원)보다 10.6%, 5,950억 3,700만원 증액된 6조 1,955억 3,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해당 세목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변화와 금리 변동,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세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26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는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택거래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친환경 차량 구매 인센티브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 안정화 및 주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부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25. 7. 1)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현재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된 상황으로 세수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약 135만호가 신규 착공(연평균 약 27만호)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26년도에는 공급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시장 예측에 대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예측되었던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취득세 증가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취득세 초과 수납에 따른 세입·세출 경정을 한 사례가 있는 바,
- 지난 '18회계연도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예산편성 당시 부동산 거래둔화 및 매매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세입예산액(4조 3,946억 2,300만원)보다 7,971억 1,400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19회계연도에도 부동산 거래 둔화를 예상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4조 2,737억 8,800만원)보다 1조 3,170억 1,8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 '20회계연도에는 당초 세입예산액(4조 6,329억 6,700만원)보다 2조 8,377억 6,400만원 초과수납 되었으며, '21회계연도에도 당초 세입예산액(5조 589억 3,700만원)보다 2조 9,510억 9,800만원 초과수납 되었고, '24회계연도에는 당초 세입예산액(5조 3,257억 5,300만원)보

다 9,512억 5,600만원 초과수납된 사례가 있음

- '25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시행, 공급대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9월말 징수실적 기준, 당초 세입예산액(5조 6,005억 원)보다 4,332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예산 편성 당시의 보수적인 세수 추계와 실제 시세수납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회계연도중 부동산의 실제 거래 현황과 부동산 거래 견인 요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민세**는 '25년도 최종예산(8,240억 1,400만원)보다 4.8%, 395억 2,600만원 증액된 8,635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해당 세목은 취업자 수, 임금 상승률, 세액 신장률 등 고용 및 경제활동 수준에 따라 미약하게나마 세수 변동요인이 있는 세원으로 평가됨

-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주민세 수입을 연평균 3.6% 전망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균등분 주민세는 주민등록인구가 정체 혹은 둔화되어 신장될 여지가 낮으나,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표 2-6〉 2026년도 주민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2026년도 추계 ^{주1)} (A)	2025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863,540	824,014	814,143	39,526	4.8	49,397	6.1

주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5.10.3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재산세**는 '25년도 최종예산(3조 6,828억 6,400만원)보다 7.0%, 2,577억 5,200만원 증액된 3조 9,406억 1,6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재산세중 ①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의 50%를 자치구간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는 '25년도 본예산(1조 7,591억 4,800만원) 대비 7.6%, 1,328억 5,200만원 증액한 1조 8,920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2-7〉 특별시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3년도 ^{주1)}	'24년도 ^{주1)}	'25년도 전망 ^{주2)}	'26년도 추계 ^{주3)}
예산액	1,678,234	1,672,734	1,759,148	1,892,000
수납액	1,659,530	1,709,617	1,831,492	
수납률	98.9	102.2	104.1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또한 ②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경우, 징수액 전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70%),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10%, 재촉계정 10%), 교통사업특별회계(10%)로 각각 진출되는 재원으로
- 최근 3년간 실제 징수액이 매년 증가하는 세원으로써 '25년도 최종예산(1조 9,237억 1,600만원)대비 6.5%, 1,249억원 증액한 2조 486억 1,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획재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및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은 '26년도 재산세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현재의 금리인하 기조는 부동산 거래를 증가시켜 공시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 수입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바,

-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은 재산세 수입의 지속적인 유동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상시적인 시장동향 파악은 세입 추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판단됨

〈표 2-8〉 도시지역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3년도 ^{주1)}	'24년도 ^{주1)}	'25년도 전망 ^{주2)}	'26년도 추계 ^{주3)}
예산액	1,843,845	1,859,325	1,923,716	2,048,616
수납액	1,815,403	1,855,063	1,962,118	
수납률	98.5	99.8	102.0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자동차세**는 '25년도 최종예산(1조 1,166억 3,800만원)보다 5억 2,300만원 증액된 1조 1,171억 6,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자동차세는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과세적 성격인 **소유분 자동차세**와 도로·교통관리,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담 성격의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됨
- 2026년도 **소유분 자동차세**는 6,09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 2.0% 감액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5,075억 7,100만원으로 2.7%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9〉 2026년도 자동차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주1)} (A)	2025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1,117,161	1,116,638	1,009,853	523	0.0	107,308	10.6
소 유 분	609,590	622,317	606,618	△12,727	△2.0	2,972	0.5
주 행 분	507,571	494,321	403,235	13,250	2.7	104,336	25.9

주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소유분 자동차세**(6,095억 9,000만원)의 경우, SUV 및 고가 차량 판매 확대 등으로 세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으나, '25년도 9월 말 기준 약 316만 4,300대로 전년도 기준으로 △1만 7,627대 감소하였고,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연세액 1월 선납 시 5% 공제) 이용 증가로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소유분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주된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로 향후 세입 기반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친환경 차량에 정액과세가 아닌 차량가격 또는 중량 등을 반영한 새로운 과세체계도 논의되고 있어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수유동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0〉 소유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3년도 ^{주1)}	'24년도 ^{주1)}	'25년도 전망 ^{주2)}	'26년도 추계 ^{주3)}
예산액	642,485	641,082	622,317	609,590
수납액	631,005	617,930	606,618	
수납률	98.2	96.4	97.5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주행분 자동차세**(5,075억 7,100만원)의 경우에는 '25년도 본예산(4,943억 2,100만원)보다 2.7% 증가를 전망한 바, 주행분 자동차세와 연동되는 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정부의 '26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고 있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5년도 말까지 연장되나, '26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어 증세 규모를 소폭 증액한 것으로 사료됨
-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6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2조 4,000억원 증가하고, 주행분 세입중 유가보조금 보전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동되어 책정되는 부분인 만큼, 국세(교통·에너지·환경세) 증액분이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25년도 실제 징수실적이 계획보다 부진하고, 국제 유가 변동 등의 요인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유지되는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실제 지난 '22년도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주행분 자동차세는 예산액 대비 66.6%가 수납되고, '24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68.3%가 수납되어 주행분은 정부의 유류세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큰 세원으로 판단됨
- 더욱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유류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유가 동향과 세제 정책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1〉 주행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3년도 ^{주1)}	'24년도 ^{주1)}	'25년도 전망 ^{주2)}	'26년도 추계 ^{주3)}
예산액	409,954	558,399	494,321	507,571
수납액	363,645	372,778	403,235	
수납률	88.7	66.8	81.6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 공영경주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10% 세율로 부과되는 소비세적 성격의 세목으로, '26년도 레저세 세입예산은 1,000억 400만원인 바, '25년도 최종예산(1,051억 5,800만원) 대비 △4.9%, △51억 5,4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영경주 매출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나 최근 증가율 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세입 감소를 전망한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레저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2022회계연도에는 결산율이 335.5%까지 급등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를 보였으나, 2023년도 이후 징수실적이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2024회계연도 결산율 90.1%, 2025년도 결산 전망 98.1% 등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됨

〈표 2-12〉 레저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3년도 ^{주1)}	'24년도 ^{주1)}	'25년도 전망 ^{주2)}	'26년도 추계 ^{주3)}
예산액	106,133	116,676	105,157	100,004
수납액	105,128	105,134	103,139	
수납률	99.1	90.1	98.1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에 부과되며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로 '26년도 세입예산은 5,444억 8,1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5,615억 7,400만원) 대비 △3.0%, △170억 9,3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나,

- 이는 지속적인 담배 판매량 감소 추세와 정부의 금연정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임
- 다만, 현재 관련 법령상 '연초를 활용하여 제조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으나,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장하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담배소비세 세입예산에 변동요인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3〉 담배소비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3년도 ^{주1)}	'24년도 ^{주1)}	'25년도 전망 ^{주2)}	'26년도 추계 ^{주3)}
예산액	582,205	571,727	561,574	544,481
수납액	576,611	553,701	531,662	
수납률	99.0	96.8	94.7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납입관리자(부산광역시장)가 시도별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세목임

- '26년도 세입예산은 2조 8,075억 2,700만원으로 '25년도 최종예산(2조 9,092억 1,100만원) 대비 △3.5%, △1,016억 8,4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나,
- 동 세목은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정부의 '26년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은 '25년도 추경(83조 3,292억원)보다 3조 2,457억원(3.9%) 증액된 86조 5,750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의 경우에도 추가 수납될 가능성이 있는 세원으로 판단됨

〈표 2-14〉 2026년도 지방소비세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추계 ^{주1)} (A)	2025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2,807,527	2,909,211	2,704,400	△101,684	△3.5	103,127	3.8
소비지출 (5 %)	745,112	760,510	724,239	△15,398	△2.0	20,873	2.9
취득세보전 (6 %)	836,405	889,629	812,689	△53,224	△6.0	23,716	2.9
전환사업 (14.3%)	1,226,010	1,259,072	1,167,472	△33,062	△2.6	58,538	5.0

주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5.10.3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국 시·도에 배분하는 것으로, 배분 재원은 크게 ① 소비지출 보전분은 부가가치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취득세 보전분은 부가가치세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③ 전환사업 보전분은 부가가치세의 14.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바,
 - 현 시점에서 '26년도 시·도별 안분율이 확정되지 않아 '25년도 수준의 안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최종 안분율에 따라 서울시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변동되나, 지방소비세 안분율이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와 증감률, 취득세 감소분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별 부가세 실제 징수실적이나 서울의 경제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안분율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세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득세는 개인·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26년도 세입예산은 8조 3,792억 2,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25년도 최종예산(7조 8,331

억 700만원) 대비 7.0%, 5,461억 1,500만원 증액 편성요청된 것임

- 지방소득세는 '26년도 시세 추계액의 31.8%를 점유하는 세목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①종합소득분과 ②법인소득분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③특별징수분, 부동산 매도에 과세하는 ④양도소득분으로 구성되나, 결국 소득규모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되기에 경제성장, 임금상승 등 경기 변동에 탄력적인 세목임
- 기획재정부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6년도 국세수입중 ①종합소득세와 ②법인세는 경기회복 및 기업실적 호조세 등에 따라 '25년도 추경예산 대비 각각 5,688억원, 2조 9,803억원 증액을 전망하고 ③근로소득세는 임금상승('26년도 최저시급, 10,320원/'25년도 대비 2.9% 인상)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25년도 추경예산 대비 3조 7,20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④양도소득세는 '25년도 추경예산대비 1조 1,129억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2-15〉 2026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추계 ^{주1)} (A)	2025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8,379,222	7,833,107	8,195,300	546,115	7.0	183,922	2.2
①종합소득분	997,951	924,409	981,300	73,542	8.0	16,651	1.7
②법인소득분	2,388,176	2,217,473	2,316,600	170,703	7.7	71,576	3.1
③특별징수분	4,171,900	3,967,831	4,060,700	204,069	5.1	111,200	2.7
④양도소득분	821,195	723,394	836,700	97,801	13.5	△15,505	△1.9

주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서울시의 경우, ①**종합소득분**은 9,979억 5,100만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8.0%, (735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며 ②**법인소득분**은 2조 3,881억 7,600만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7.7%, (1,707억 3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기업실적 등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③**특별징수분(주로 근로소득 분)**은 4조 1,719억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5.1%, (2,040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최저임금 및 서울 생활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임 특히, ④**양도소득분**은 8,211억 9,500만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13.5% (978억 1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25년도 본예산을 부동산 거래 침체 우려로 보수적으로 편성한 기저효과로 사료됨

〈표 2-16〉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3년도 ^{주1)}	'24년도 ^{주1)}	'25년도 전망 ^{주2)}	'26년도 추계 ^{주3)}
예산액	7,933,937	7,692,288	7,833,107	8,379,222
수납액	7,983,158	7,451,844	8,195,300	
수납률	100.6	96.9	104.6	

주1) 각 회계연도 세입결산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 ('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주3)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지역자원과 특정시설의 보호·개발,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인 바, '26년도 세입예산은 3,10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5년도 최종예산(2,942억 6,600만원) 대비 5.5%, 161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세목은 지하수, 지하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1억 200만원(△4.7%)과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에 대해 부과하는 **특정시설분** 21억 8,000만원(△27.4%), 소방

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선박에 부과하는 **소방분** 3,081억 4,800만원(5.8%)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시설분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방분 세입 증가를 통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세입 증대를 전망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2-17〉 2026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내용별 증·감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추계 ^{주1)} (A)	2025년도 ^{주2)}		본예산대비		전망대비	
		본예산 (B)	전망 (C)	금액 (A-B)	비율 (A-B/B)	금액 (A-C)	비율 (A-C/C)
소 계	310,430	294,266	302,865	16,164	5.5	7,565	2.5
특정자원분	102	107	103	△5	△4.7	△1	△1.0
특정시설분	2,180	3,004	2,180	△824	△27.4	-	-
소방분	308,148	291,155	300,582	16,993	5.8	7,566	2.5

주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5.10.3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중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추계 후 세목별 세율을 반영하여 추계하는 세목으로 '26년도 세입예산은 1조 8,662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8〉 2026년도 지방교육세 세목별 추계액

(단위 : 백만원, %)

과목명	2026년도 예산안 ^{주1)}	서울 ^{주2)}	지방교육세 추계액
합 계	8,263,559		1,866,200
부 동 산 취 득 세	2,735,085	20.0	547,017
재 산 세	3,791,854	20.0	758,371
주 민 세 (개인분, 사업소분)	70,667	25.0	17,667
자 동 차 세	593,323	30.0	177,997
레 저 세	100,004	40.0	40,002
담 배 소 비 세	544,481	43.9	239,517
등 록 면 허 세	428,145	20.0	85,629

주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5.10.31)

주2) 서울특별시, 세무과-21370('25.10.27) “2026년도 시세수입 추계(안) 보고”

-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수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 등 본세 세목들의 세입 전망치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25년도 최종예산(1조 7,583억 6,300만원) 대비 6.1%, 1,078억 3,7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은 '25년도 최종예산(1조 7,180억 7,200만원)보다 18.1%, 3,115억 7,900만원 증액된 2조 296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9〉 2026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세 외 수 입	2,029,652	1,718,072	311,579	18.1
경 상 적 세 외 수 입	964,692	863,096	101,596	11.8
재 산 임 대 수 입	197,700	202,323	△4,622	△2.3
사 용 료 수 입	156,157	153,216	2,940	1.9
수 수 료 수 입	36,586	7,833,107	△7,796,520	△99.5
사 업 수 입	486,235	370,527	115,708	31.2
징수교부금수입	13,885	11,506	2,379	20.7
이 자 수 입	74,126	86,702	△12,576	△14.5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033,312	807,206	226,106	28.0
재 산 매 각 수 입	594,667	379,746	214,920	56.6
자치단체간부담금	14,697	15,515	△818	△5.3
보조금반환수입	290,412	275,272	15,140	5.5
기 타 수 입	133,534	136,671	△3,136	△2.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612	9,123	△511	△5.6
과 징 금	711	7,833,107	△7,832,395	△100.0
변 상 금	5,512	5,861	△348	△6.0
과 태 료	2,305	2,442	△136	△5.6
부 담 금	82	150	△67	△45.2
지 난 연 도 수 입	23,035	38,645	△15,610	△40.4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5년도 예산(8,630억 9,600만원)보다 11.8%, 1,015억 9,600만원 증액된 9,646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2,023억 2,300만원)보다 △2.3%, △46억 2,200만원 감액한 1,97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재산임대수입은 지하도상가 임대 및 광고 등 부대사업 수입(393억 6,206만원),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182억 5,217만원) 및 월드컵경기장 임대료(160억 1,335만원)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편성한 바,
 - '25년 9월, 공유재산심의에서 소장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준이 신규 승인되어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원으로 예상되어, 임대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532억 1,600만원) 대비 1.9%, 29억 4,000만원 증액한 1,561억 5,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시 도로상 전주, 수도관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사용료(980억 800만원), 한강둔치 점용료 등 하천사용료(71억 8,300만원), 주차요금수입(89억원) 등은 증액 편성하고,
 - 서울대공원,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입장료 수입(209억 7,900만원) 및 기타 사용료(273억 1,500만원)는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수수료수입**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388억 2,000만원) 대비 △5.8%, △22억 3,300만원 감액한 365억 8,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의 의료사업 수입인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을 '25년 대비 △21억 7,600만원 감액하여 343억원으로 편성한 것임
- **사업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3,705억 2,700만원)보다 31.2%, 1,157억 800만원 증액된 4,862억 3,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3,138억 6,4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1,294억 7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임
 -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의 경우, '24년도 예산안(1,704억 5,000만원)에 편성하고, '25년도 예산(1,716억 200만원)의 경우에도 편성할 당시 5차 및 6차 매각이 유찰되어 현재까지 실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자산으로,
 - '26년도에는 해당 용지에 대한 매각 수입이 세입예산에서 허수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매각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매각이 곤란할 경우, 세입예산안에서 제외하고 실제 매각 시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보수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115억 600만원)보다 20.7%, 23억 7,900만원 증액된 138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112억 9,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25억 900만원)이 주요 수입 내역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867억 200만원)보다 △14.5%, △125억 7,600만원 감액한 741억 2,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금 운용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5년도(702억 5,500만원)보다 △172억 9,500만원 감액된 529억 6,0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이나, 회계연도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여부 및 공금 운용 규모에 따라 이자수입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25년도 최종예산(8,072억 600만원)보다 28.0%, 2,261억 600만원 증액된 1조 333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3,797억 4,600만원)보다 56.6%, 2,149억 2,000만원 증액한 5,946억 6,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5,945억 9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1억 5,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주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①DMC 교육첨단부지(2,581억 5,200만원), ②DMC 홍보관 부지(1,098억 5,200만원), ③구) 국립보건원 부지(1,272억 5,700만원)등 대규모 토지 매각인 바,
 - ②DMC 홍보관 부지는 '24년, '25년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지구단위 계획 변경계획 지연으로 미수납되었으며, ③구) 국립보건원 부지는 '25년도에 매각이 유찰되어 미수납된 이력이 있어,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실현되지 못한 재산 매각수입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현실성을 저해할 수 있어 행정 절차 선행 등 매각 수입 실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사업이나 수혜에 대한 부담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55억 1,500만원)보다 △5.3%, △8억 1,800만원 감액 편성한 146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보조금반환수입**은 시비보조금, 민간보조금, 위탁사업비의 사용잔액 반환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2,752억 7,200만원)보다 5.5%, 151억 4,000만원 증액된 2,904억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수입**은 체납처분 수익, 기부금 수입, 위약금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366억 7,100만원)보다 △31억 3,600만원을 감액한 1,335억 3,4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5년도 최종예산(91억 2,300만원)보다 △5.6%, △5억 1,100만원 감액된 86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법령상 의무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은 금년도 예산(6억 6,900만원)보다 6.3%, 4,200만원 증액한 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고, 법령 및 계약 위반 등에 따른 **변상금**은 금년도 예산(58억 6,100만원)보다 △5.9%, △3억 4,800만원 감액한 55억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행정질서 및 의무이행을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금인 **과태료**는 23억 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예산(24억 4,200만원)보다 △5.6%, △1억 3,6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금년도 예산(1억 5,000만원)보다 △44.7%, △6,700만원 감액한 8,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은 추계에 한계가 있고, 실제 수납률에 대한 다양한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어 보수적인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난년도 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한 수입금으로 '25년도 최종예산(386억 4,500만원)보다 △40.4%, △156억 1,000만원 감액한 230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교부세**의 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어 있고, 부동산교부세의 대상을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만 교부되고 있음
- '26년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930억 1,400만원)보다 △59.6%, △554억 4,000만원 감액된 375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0〉 2026년도 지방교부세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륜
지 방 교 부 세	37,574	93,014	△55,440	△59.6
보 통 교 부 세	-	51,802	△51,802	△100
특 별 교 부 세	-	4,573	△4,573	△100
소 방 안 전 교 부 세	37,574	36,639	934	2.6

- **보통교부세**중 분권교부세는 관련 법령 제4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중 매년도 시·도별 안분비율에 따라 교부한 바,
 - '26년도 분권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518억 200만원)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것으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보전하였으나,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15년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 분권교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추가교부한 사례가 있으나, '26년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이후 추가교부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 **특별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재난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으로, '26년 세입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지난 '24년도와 '25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안에는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24년도 26억 9,800만원, '25년도 45억 7,30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간주처리를 통해 이입한 바, '26년도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중 추가 교부될 것으로 예상됨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도 최종예산(366억 3,900만원)보다 2.6%, 9억 3,400만원 증액된 37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나, 정부예산안 의결 후 회계연도 중 확정 금액이 통보될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조정 제도임

○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편성요청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25년도 최종예산(9조 1,813억 8,900만원)보다 △13.1%, △1조 2,060억 2,200만원이 감액된 7조 9,753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금년도 최종예산(8조 7,934억 9,700만원)보다 △13.9%, △1조 2,258억 3,300만원 감액된 7조 5,67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741억 8,000만원)보다 21.8%, 161억 3,700만원 증액된 90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기금**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3,137억 1,200만원)보다 1.2%, 36억 7,300만원 증액된 3,173억 8,5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 **지방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세입과목으로, '26년도에는 1,842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25년도 예산(1,500억원) 대비 22.8%, 342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차환(1,500억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240억원)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한 것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보전수입과 회계간 전입금, 예탁 및 예수 등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계상하는 세입과목으로 '26년도에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6,425억 200만원)보다 △ 80.9%, △1조 3,293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3,131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전년도이월금 403억 6,3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7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한 바,
 - 20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25년 예산기준 9,290억 2,800만원)을 현재 시점에는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결산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조치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6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부거래**는 2,513억 1,1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13억 1,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2)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편성현황

- '2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조 6,116억 8,5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체 세입예산안의 28.4%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14조 3,501억 4,600만원)보다 1.8%, 2,615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임

〈표 2-21〉 2026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5년		증 감	
	예 산 안	구 성 비	최 종 예 산	구 성 비	증 감 액	증 감 륜
총 계	51,505,986	100.0	52,047,654	100.0	△541,667	△1.0
일 반 회 계	36,894,301	71.6	37,697,507	72.4	△803,205	△2.1
특 별 회 계	14,611,685	28.4	14,350,146	27.6	261,538	1.8
공 기 업 계	2,120,003	4.1	2,241,506	4.3	△121,503	△5.4
수 도 사 업 계	1,100,000	2.1	1,116,189	2.1	△16,189	△1.5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계	1,020,003	2.0	1,125,317	2.2	△105,313	△9.4
기타특별회계	12,491,681	24.3	12,108,640	23.3	383,041	3.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금년도 최종예산(12조 1,086억 4,000만원)보다 3.2%, 3,830억 4,200만원 증액된 12조 4,91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22〉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5년		증 감	
	예 산 안	구 성 비	최 종 예 산	구 성 비	증 감 액	증 감 륜
계	12,491,681	100.0	12,108,640	100.0	383,041	3.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285,990	18.3	1,804,745	14.9	481,244	26.7
교통사업특별회계	2,027,704	16.2	1,895,465	15.7	132,238	7.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9,647	2.5	81,926	0.7	227,720	278.0
주택사업특별회계	2,257,727	18.1	3,001,622	24.8	△743,894	△24.8
도시개발특별회계	1,817,015	14.5	2,078,333	17.2	△261,317	△12.6
균형발전특별회계	495,707	4.0	192,553	1.6	303,154	157.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547	0.1	21,274	0.2	△9,727	△4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92,816	17.6	2,002,159	16.5	190,657	9.5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011	0.2	29,382	0.2	△1,371	△4.7
소방특별회계	1,065,513	8.5	1,001,175	8.3	64,337	6.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5.10.31)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8,047억 4,600만원)보다 26.7%, 4,812억 4,400만원 증액된 2조 2,85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바,

- 세입의 주요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4,075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채도 금년도(9,384억 5,800만원)보다 4,046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3,753억 1,400만원)은 1,015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8,954억 6,600만원)보다 7.0%, 1,322억 3,800만원 증액된 2조 277억 4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교통유발부담금(2,492억 2,100만원) 등 부담금 수입을 금년도보다 2,59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도 금년도보다 1,311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은 금년도(6,527억 9,700만원)보다 1,631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819억 2,700만원)보다 278.0%, 2,277억 2,000만원 증액된 3,096억 4,7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방채 89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129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3조 1억 6,200만원)보다 △24.8%, △7,438억 9,400만원 감액된 2조 2,57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국고보조금 등을 금년도보다 △1,433억 1,7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지방채(959억 5,700만원)도 금년도(4,330억원)보다 △3,370억 4,300만원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783억 3,300만원)보다 △12.6%, △2,613억 1,700만원 감액된 1조 8,170억 1,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보다 219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방채(1,025억 9,500만원)는 금년도(4,124억원)보다 △3,098억 500만원 감액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925억 5,300만원)보다 157.4%, 3,031억 5,400만원 증액된 4,957억 7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금년도보다 1,530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금년도(899억 9,800만원)보다 1,359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세입규모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12억 7,500만원)보다 △45.7%, △97억 2,700만원 감액된 115억 4,7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102억 6,000만원)은 7억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잉여금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21억 6,000만원)보다 9.5%, 1,906억 5,700만원 증액된 2조 1,928억 1,6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잉여금(순세계잉여금) 194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293억 8,300만원)보다 △4.7%, △13억 7,100만원 감액된 280억 1,1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16억 8,9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소방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11억 7,600만원)보다 6.4%, 643억 3,700만원 증액된 1조 655억 1,3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전입금이 금년도 보다 479억 4,1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23〉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 감 사 유
일반 → 특별		5,399,582	4,686,318	713,263	
일 반 회 계	균 형 발 전	225,928	89,998	135,930	균특보조금 지역자율계정 확대로 인한 전입금 증가
	의료급여기금	1,116,299	956,955	159,343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증가
	교 통 사 업 (교통관리계정)	611,095	458,954	152,140	예수금수입 감소에 따른 일반 전입금 증가
	교 통 사 업 (주차장관리계정)	204,861	192,371	12,490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도 시 개 발	1,434,031	1,355,101	78,930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주 택 사 업 (재 축 계 정)	204,861	192,371	12,490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주 택 사 업 (도 정 계 정)	204,861	192,371	12,490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추계액 증가
	소 방 (정책사업비계정)	234,871	222,798	12,072	지역지원시설세 소방분 세입추계액 증가
	소 방 (인건비계정)	787,456	751,588	35,868	지역지원시설세 소방분 세입추계액 증가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375,314	273,805	101,508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 감소에 따른 전입금 증가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5.10.31)

〈표 2-24〉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43,691	42,253	1,438	
한강수질개선	수 도 사 업	3,624	3,987	△363	'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국비) 운용계획 정부(안) 반영
한강수질개선	공기업하수도	14,426	15,489	△1,062	'2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국비) 운용계획 정부(안) 반영
공기업하수도	수 도 사 업	25,365	22,500	2,865	요금인상분 반영
공기업하수도	한강수질개선	276	276	-	'24년 집행잔액 고려하여 반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표 2-25〉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 세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5년		증 감	
	예 산 안	구 성 비	최 종 예 산	구 성 비	증 감 액	증 감 륜
계	12,491,681	100.0	12,108,640	100.0	383,041	3.2
자 체 수 입	2,018,419		1,991,195		27,223	1.4
경상적세외수입	1,215,310		1,347,077		△131,767	△9.8
임시적세외수입	112,591	16.2	222,100	16.4	△109,508	△49.3
지방행정제재금 · 부 과 금	671,190		401,897		269,292	67.0
지난연도수입	19,326		20,120		△793	△3.9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6,605,078		6,279,286		325,791	5.2
보 전 수 입 등	153,043		230,348		△77,304	△33.6
순세계잉여금	114,759		197,308		△82,549	△41.8
전년도이월금	2,841		9,110		△6,269	△68.8
용자금원금수입	27,298	52.9	21,741	51.9	5,556	25.6
보조금등반환금	8,144		2,187		5,956	272.3
내 부 거 래	6,452,034		6,048,938		403,096	6.7
전 입 금	5,399,858		4,688,064		711,793	15.2
예탁금및예수금	1,052,176		1,360,874		△308,697	△22.7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7,400	0.1	18,300	0.2	△10,900	△59.6
지 방 채	1,657,509		1,783,858		△126,348	△7.1
차 입 금	6,280	13.3	2,400	14.7	3,880	161.7
지방채증권	1,651,229		1,781,458		△130,228	△7.3
국 고 보 조 금 등	2,203,275	17.6	2,035,999	16.8	167,276	8.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25.10.31),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설명서」 재구성

○ 세입예산중 지방채는 금년도 최종예산(1조 7,838억 5,800만원)보다 △7.1%, △1,263억 4,800만원 감액된 1조 6,575억 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2-26〉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채^{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2026 (예산안)	2025 (최종예산)	증감	비고
계	1,657,509	1,783,858	△126,348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1,343,117	938,458	404,659	
모집공채	748,429	271,500	476,929	지하철 부채 상환 253,000 지방채 상환 241,000 도시철도공채 상환 172,529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81,900
매출공채	594,687	666,958	△72,270	도시철도 매출공채 594,687
광역교통시설 (모집공채)	89,340	-	89,340	모집공채(광역철도)81,000 모집공채(동부간선도로 확장)8,340
주택사업 (모집공채)	95,957	433,000	△337,042	지방채상환(국민)58,957 지방채상환(도정)37,000
도시개발	102,595	412,400	△309,805	
정부자금 채	6,280	2,400	3,880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6,280
모집공채	96,315	410,000	△313,685	지방채상환 75,000 지방채발행 21,315
균형발전 (모집공채)	26,500	-	26,500	평창동 미술문화 복합공간건립 등

주1) 세입과목중 “지방채”로 매출공채, 모집공채,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포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모집공채 7,484억 2,900만원과 매출공채 5,946억 8,700만원을 발행하고자 금년도(9,384억 5,800만원)보다 4,046억 5,900만원 증액된 1조 3,431억 1,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를 부담하고자 지방채 810억원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893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모집공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4,330억원)보다 △3,370억 4,200만원 감액된 959억 5,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62억 8,000만원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460억원, 재정구간 290억원)를 위해 모집공채 750억원을 발행,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차환 50억원, 서부간선 지하화 차환 51억 5,000만원 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4,124억원)보다 △3,098억 500만원 감액된 1,025억 9,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최종예산(2조 359억 9,900만원)보다 8.2%, 1,672억 7,600만원 증액된 2조 2,032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27〉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 등^{주1)}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특 별 회 계	2 0 2 6 (예 산 안)	2 0 2 5 (최 종 예 산)	증 감	증 감 률
계	2,203,275	2,035,999	167,276	8.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52,129	179,977	△27,848	△15.5%
교통사업특별회계	212,678	81,511	131,167	160.9%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300	3,420	△2,120	△62.0%
주택사업 특별회계	358,036	501,353	△143,317	△28.6%
도시개발 특별회계	184,528	162,603	21,924	13.5%
균형발전 특별회계	211,038	57,946	153,091	264.2%
의료급여기 특별회계	1,053,686	1,019,579	34,106	3.3%
한강수질개 특별회계	24,863	26,552	△1,689	△6.4%
소방특별회계	5,014	3,054	1,960	64.2%

주1)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으로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포함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과목으로 편성요청 되어 있는 바,
 -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순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령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관련 법령에 따른 이월금,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당해 연도('25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전망분 총 1,940억 9,900만원 전액을 다음연도('26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의 한정성을 극복하고자 미리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은 이해되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해당 특별회계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원 자체를 미리 소진하게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 예산의 건전재정과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결산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조치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8〉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특 별 회 계	'26 예산안 편성 ^{주1)} (순세계잉여금)	'25 본예산 편성(A) ^{주2)} (순세계잉여금)	'2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B) ^{주2)} (순세계잉여금)	추 중 요 경 · 청 안 감 액 (C)=(B)-(A)
수 도 사 업	79,343	111,655	198,483	86,828
① 교 통 사 업	22,231	54,867	39,239	△15,628
② 주 택 사 업	-	238,348	4,251	△234,096
도 시 개 발	49,645	31,366	78,174	46,808
균 형 발 전	-	-	15,317	15,317
의 료 급 여 기 금	19,414	17,350	20,511	3,160
③ 한 강 수 질 개 선	597	596	399	△197
④ 소 방	22,869	26,276	9,051	△17,224

주1)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5.10.31)

주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지난 '2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한 바,
- '25년 6월, '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①교통사업특별회계 △156억 2,800만원, ②주택사업특별회계 △2,340억 9,600만원, ③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9,700만원, ④소방특별회계 △172억 2,4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제출된 바,

- '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63개 사업, 4조 4,098억원이며, 금년도 본예산(257개 사업, 4조 1,627억원) 대비 6개 사업이 증가하고, 2,47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사업 239개(3조 9,607억 9,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사업(4,482억 1,700만원) 21개, 기금 사업 3개(7억 7,100만원)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9〉 성인지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증감률
총 계	263	4,409,786	4,162,674	247,112	5.9
예 산	260	4,409,015	4,161,824	247,191	5.6
일 반 회 계	239	3,960,798	3,895,047	65,751	1.7
특 별 회 계	21	448,217	266,777	181,440	68.0
기 금	3	771	850	△80	△9.3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7

- 성인지예산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569억 5,900만원(41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2,428억 8,400만원(33개 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2조 3,623억 800만원(88개 사업), 기타사업 1조 4,476억 3,500만원(101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직별 편성 현황의 경우, 31개 실·본부·국에 263개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 여성가족실 70개 사업(1조 8,754억 4,100만원), 복지실 45개 사업(1조 7,249억 5,900만원), 경제실 16개 사업(2,519억 8,300만원), 시민건강국 19개 사업(918억 9,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89.4%, 3조 9,443억원이 여성가족실과 복지실을 포함한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적인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 예산편성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본부·국별로 균형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0〉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26년도		2025년도		증 감	증 감 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263	4,409,786	100.0	4,162,674	100.0	247,112	5.9
필수	양 성 평 등 정 책 추 진 사 업 주 1)	356,959	8.1	354,159	8.5	2,800	0.8
	성별영향평가사업 주 2)	242,884	5.5	301,567	7.2	△58,683	△19.5
	자치단체특화사업 주 3)	2,362,308	53.6	2,196,980	52.8	165,328	7.5
	기 타 사 업 주 4)	1,447,635	32.8	1,309,968	31.5	137,667	10.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 p.8

주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202)

주2) 성별영향평가사업

- 관련 법령에 따른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주3)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주4) 기타사업

-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 ② 기타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표 2-31〉 실·본부·국별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총 계	263	4,409,786	100	4,162,674	100	247,112	5.9
홍 보 기 획 관	2	7,939	0.2	8,368	0.20	△428	△5.1
여 성 가 족 실	70	1,875,441	42.5	1,662,863	39.95	212,579	12.8
글로벌도시정책관	9	12,594	0.3	11,466	0.28	1,127	9.8
비 상 기 획 관	1	291	0.0	467	0.01	△176	△37.7
미래청년기획관	8	91,789	2.1	86,208	2.07	5,582	6.5
기 획 조 정 실	1	615	0.0	775	0.02	△160	△20.7
소 방 재 난 본 부	4	3,203	0.1	3,397	0.08	△195	△5.7
경 제 실	16	251,983	5.7	249,253	5.99	2,730	1.1
복 지 실	45	1,724,959	39.1	1,596,340	38.35	128,618	8.1
교 통 실	5	87,156	2.0	92,918	2.23	△5,762	△6.2
기 후 환 경 본 부	2	3,196	0.1	3,776	0.09	△580	△15.4
문 화 본 부	13	20,941	0.5	13,740	0.33	7,201	52.4
관 광 체 육 국	6	42,552	1.0	38,954	0.94	3,598	9.2
평 생 교 육 국	11	71,783	1.6	62,122	1.49	9,660	15.6
시 민 건 강 국	19	91,891	2.1	83,592	2.01	8,299	9.9
민 생 노 동 국	10	54,096	1.2	50,156	1.20	3,940	7.9
디 지 털 도 시 국	3	1,264	0.0	1,271	0.03	△7	△0.5
행 정 국	6	5,601	0.1	6,375	0.15	△774	△12.2
디 자 인 정 책 관	1	890	0.0	1,212	0.03	△322	△26.6
건 설 기 술 정 책 관	1	39	0.0	39	0.00	-	0.0
재 난 안 전 실	2	1,321	0.0	1,717	0.04	△396	△23.0
주 택 실	6	41,103	0.9	158,303	3.80	△117,200	△74.0
도 시 공 간 본 부	1	445	0.0	436	0.01	8	1.9
균 형 발 전 본 부	3	1,663	0.0	1,248	0.03	415	33.3
정 원 도 시 국	5	10,161	0.2	19,952	0.48	△9,792	△49.1
물 순 환 안 전 국	1	367	0.0	375	0.01	△8	△2.0
미 래 한 강 본 부	2	3,219	0.1	4,163	0.10	△944	△22.7
서울역사박물관	3	2,502	0.1	2,361	0.06	140	5.9
시 립 미 술 관	2	270	0.0	331	0.01	△60	△18.2
감 사 위 원 회	-	-	0.0	72	0.00		순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	231	0.0	425	0.01	△194	△45.7
자치경찰위원회	1	281	0.0	-	0.00		순증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서」, p.10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바, '26년도의 경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43개 정책사업목표, 578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임
- '25년도의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 239개 정책사업목표, 567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6년도에는 정원도시국(43개→47개)과 기획조정실(21개→25개)의 단위사업 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였고, 성과계획 지표를 보다 세분화함에 따라 지표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2〉 실·본부·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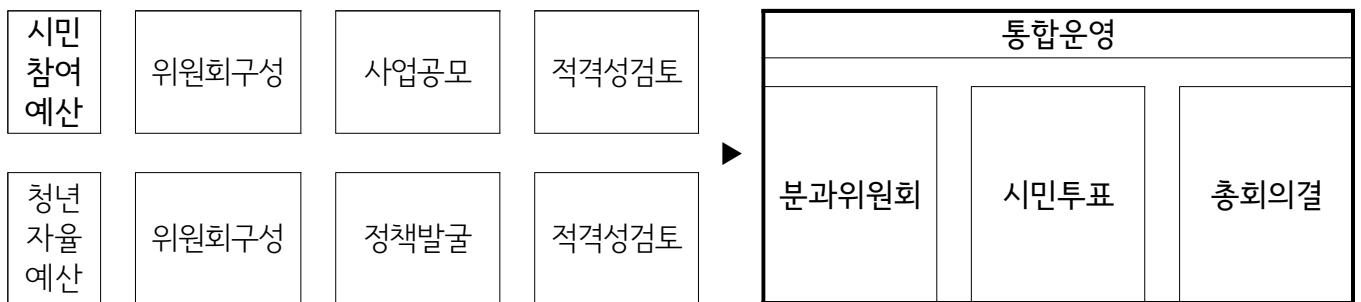
실·본부·국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9	243	450	578	49,385,983	46,174,344	3,211,640
대 변 인	1	1	2	2	1,805	2,260	△455
홍 보 기 획 관	1	5	11	12	68,766	74,347	△5,580
여 성 가 족 실	1	8	14	21	3,593,351	3,217,156	376,195
글로벌도시정책관	1	4	8	6	52,164	54,064	△1,900
비 상 기 획 관	1	1	2	7	7,041	8,020	△979
미 래 청 년 기 획 관	1	2	4	4	107,293	105,221	2,071
기 획 조 정 실	1	13	20	25	1,003,134	928,330	74,804
소 방 재 난 본 부	1	10	24	19	2,087,841	1,979,138	108,704
경 제 실	1	12	22	23	729,663	676,218	53,445
복 지 실	1	11	19	32	12,298,593	11,122,652	1,175,942
교 통 실	1	10	19	19	4,003,611	3,305,240	698,372
기 후 환 경 본 부	1	10	15	27	577,970	584,284	△6,314
문 화 본 부	1	11	13	37	712,400	651,600	60,800
관 광 체 육 국	1	5	9	18	295,402	310,444	△15,041
평 생 교 육 국	1	6	9	13	4,583,815	4,354,916	228,900
시 민 건 강 국	1	12	29	25	791,861	708,241	83,620
민 생 노 동 국	1	8	13	24	226,271	199,900	26,371
디 지 털 도 시 국	1	8	15	20	173,112	179,437	△6,326
행 정 국	1	8	12	13	4,978,897	4,670,473	308,424
재 무 국	1	6	12	12	3,482,026	3,264,839	217,186
민생사법경찰국	1	2	4	3	1,417	1,309	108
미래공간기획관	1	4	8	6	66,103	67,390	△1,288
디 자 인 정 책 관	1	3	5	6	58,620	64,254	△5,635
건설기술정책관	1	4	7	6	6,668	7,322	△654
재 난 안 전 실	1	10	17	33	1,369,845	1,343,426	26,418
주 택 실	1	12	21	28	3,572,658	4,334,899	△762,241
도 시 공 간 본 부	1	8	8	12	35,248	43,501	△8,253
균 형 발 전 본 부	1	9	14	16	1,781,335	1,537,257	244,078
정 원 도 시 국	1	13	16	47	404,613	779,563	△374,950
물 순 환 안 전 국	1	4	5	9	293,003	237,797	55,206
인 재 개 발 원	1	1	3	4	17,974	18,238	△264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12	6	1,769,383	1,087,871	681,512
미 래 한 강 본 부	1	2	5	8	119,405	128,632	△9,227
서울역사박물관	1	1	3	6	18,023	21,965	△3,942
시 립 미 술 관	1	1	6	4	26,928	34,671	△7,743
의 회 사 무 처	1	3	26	8	38,180	41,740	△3,560
감 사 위 원 회	1	5	8	7	1,918	1,653	26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2	4	4	1,200	1,212	△12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3	6	6	28,447	24,863	3,584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첨부서류, p.153

3) 참여예산

- 참여예산 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지방예산 편성 등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3년도 예산부터 시행되고 있음
- 참여예산은 '26년도부터 시민참여예산과 청년자율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정제한형 공모사업 분야에 청년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임

〈표 2-33〉 서울시 '25년도 시민참여예산 주요개선 사항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980 ('25. 2.17), “2025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재구성

- '26년도 참여예산은 총 11개 사업, 17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약자와의 동행 3개 사업, 4억 5,600만원, 청년 1개 사업, 1,500만원, 자유 제안사업 7개 사업, 13억 1,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4〉 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6년도 예산안		'25년도 본예산		증감	
	세부사업수	예산액	세부사업수	예산액 ^{주2)}	세부사업수	예산액
계	11	1,786	25	8,020	△14	△6,234
약자와의동행	3	456	11	4,316	△8	△3,860
청년 ^{주1)}	1	15	6	1,594	△5	△1,579
자유제안	7	1,315	8	2,110	△1	△795

주1) '25년도의 경우에는 청년자율예산 규모를 “청년”란에 작성함

주2) '25년도 의결액 기준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4521 ('25.11.25)

○ 다만, 참여예산제가 시행된지 13년이 지났고, '25년도부터 '시민투표 반영 비율' 확대,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중 청년위원의 비중 확대, '청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 참여예산 편성액은 금년도보다 △62억 3,400만원 감소하였고, 지정제안형 공모사업 분야(약자와의 동행, 청년) 사업의 경우에는 △54억 3,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방식에 대한 개선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①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며 ③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도 예산제도임

-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16개 계정), 21개 기금(29개 계정)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를 268조 4,139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재정 규모**를 53조 6,828억원으로 전망한 바,
 - **일반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94조 2,372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38조 8,474억원으로 전망하며 **특별회계**는 총 재정규모를 74조 1,768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재정규모를 14조 8,354억원으로 전망하여 제출하였음

〈표 2-35〉 재정규모(총계규모)^{주1)}

(단위 : 억원, %)

구분	2025년도 최종	계획기간						연평균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규모	비중	증가율
계	520,477	2,684,139	515,060	520,367	534,047	549,044	565,621	536,828	100.0	2.4
일반회계	376,975	1,942,372	368,943	376,368	386,587	399,717	410,757	388,474	72.4	2.7
특별회계	143,501	741,768	146,117	143,999	147,461	149,327	154,864	148,354	27.6	1.5

※ 자료근거 :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5.11), p.20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세입전망**의 경우, 총규모 268조 4,139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53조 6,82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 **지방세수입**의 경우, 총규모 139조 6,128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27조 9,226억원으로 전 세목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2.9%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세외수입**의 경우, 총규모 29조 6,999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5조 9,400억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방식 변경 등으로 연평균 $\Delta 0.5\%$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이전재원**의 경우, 총규모 63조 8,852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는 12조 7,770억원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3.3%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경우, 총규모 35조 2,161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7조 432억원으로 연평균 1.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표 2-36〉 세입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최종 (2025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규모	비중	증가율
계	520,477	2,684,139	515,060	520,367	534,047	549,044	565,621	536,828	100.0	2.4
지방세 수입	249,125	1,396,128	263,543	271,052	279,077	287,062	295,394	279,226	52.0	2.9
세외 수입	54,946	296,999	59,510	59,226	59,739	60,239	58,285	59,400	11.1	△0.5
이전 재원	132,969	638,852	120,653	123,223	126,081	131,764	137,131	127,770	23.8	3.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437	352,161	71,353	66,867	69,150	69,980	74,811	70,432	13.1	1.2

※ 자료근거 :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5.11), p.22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세출전망**의 경우, 총계규모 총 268조 4,139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53조 6,828억원으로 전망하고
- 회계간전출(규모 28조 1,913억원, 연평균 5조 6,383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총규모 240조 2,225억원으로 연평균 48조 44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제출한 것임

〈표 2-37〉 세출전망^{주1)}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규모	증가율
총 계 규 모	2,684,139	515,060	520,367	534,047	549,044	565,621	536,828	2.4
회 계 간 전 출	281,913	54,513	55,282	54,444	56,725	60,949	56,383	2.8
순 계 규 모	2,402,225	460,547	465,085	479,603	492,319	504,671	480,445	2.3

※ 자료근거 :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5.11), p.26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의 경우, 계획기간 순계규모(총규모 240조 2,225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총규모 11조 9,146억원)와 재무활동(총규모 16조 1,77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 총규모는 212조 1,304억원으로,

- ①**사회복지**는 2026년도부터 2030년도 사업기간 동안 99조 3,643억원(41.4%), ②**자치구지원**은 37조 3,046억원(15.5%), ③**교육청지원(법정의무)** 21조 6,448억원(9.0%), ④**공원·환경** 13조 64억원(5.4%), ⑤**도로·교통** 12조 1,018억원(5.0%) 등으로 배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8〉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주1)}

(단위 : 억원, %)

구분	계	연차별 투자계획				
		2026	2027	2028	2029	2030
순계규모	2,402,225 (100.0)	460,547 (100.0)	465,085 (100.0)	479,603 (100.0)	492,319 (100.0)	504,671 (100.0)
사 업 비	2,121,304 (88.3)	400,713 (87.0)	410,928 (88.4)	424,527 (88.5)	435,789 (88.5)	449,347 (89.0)
사 회 복 지	①993,643 (41.4)	187,214 (40.7)	190,642 (41.0)	198,497 (41.4)	206,030 (41.8)	211,260 (41.9)
도 로 · 교 통	⑤121,018 (5.0)	24,212 (5.3)	24,467 (5.3)	24,367 (5.1)	22,237 (4.5)	25,735 (5.1)
공 원 · 환 경	④130,064 (5.4)	25,616 (5.6)	24,122 (5.2)	25,205 (5.3)	26,845 (5.5)	28,276 (5.6)
도 시 안 전	98,720 (4.1)	16,265 (3.5)	17,998 (3.9)	20,663 (4.3)	21,409 (4.3)	22,385 (4.4)
문 화 관 광	54,361 (2.3)	10,116 (2.2)	10,275 (2.2)	10,721 (2.2)	11,261 (2.3)	11,988 (2.4)
산 업 경 제	49,675 (2.1)	9,255 (2.0)	10,144 (2.2)	10,498 (2.2)	10,185 (2.1)	9,593 (1.9)
도 시 계 획 및 주 택 정 비	29,118 (1.2)	4,309 (0.9)	7,005 (1.5)	5,383 (1.1)	5,457 (1.1)	6,964 (1.4)
일 반 행 정	49,138 (2.0)	10,695 (2.3)	10,192 (2.2)	10,190 (2.1)	10,264 (2.1)	7,797 (1.5)
자 치 구 지 원	②373,046 (15.5)	71,187 (15.5)	72,646 (15.6)	74,429 (15.5)	76,307 (15.5)	78,477 (15.6)
교 육 청 지 원 (법 정의 무)	③216,448 (9.0)	40,126 (8.7)	42,447 (9.1)	43,582 (9.1)	44,610 (9.1)	45,683 (9.1)
예 비 비	6,073 (0.3)	1,718 (0.4)	990 (0.2)	992 (0.2)	1,184 (0.2)	1,189 (0.2)
행 정 운 영 경 비	119,146 (5.0)	23,207 (5.0)	23,512 (5.1)	23,822 (5.0)	24,137 (4.9)	24,468 (4.8)
재 무 활 동	161,773 (6.7)	36,626 (8.0)	30,645 (6.6)	31,255 (6.5)	32,392 (6.6)	30,855 (6.1)

※ 자료근거 :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5.11), p.40

※ () 안의 수치는 전체 순계규모 대비 분야별 자원배분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주1) 기금 운용규모는 미포함된 것임

- 관련 법령은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지난 '22년도 예산안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투표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총 2,068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405명이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중기재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시정현황에도 명시한 것과 같이 '25년 8월말 기준, 서울 시민 958만 8,000명의 주민 중 불과 0.03%, 2,068명이 참여한 것으로,
 - 조례에 따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의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로
- 관련 법령 등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기후예산제)’에 대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는 현재까지 기후예산제에 대한 시행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기후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26년도 기후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의 「2026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중 기후예산제 운영개요에 의하면, 시 본청, 사업소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하며①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 ②당해연도 10억원 미만 사업중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과 '25년도 기후예산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26년도 기후예산 사업은 254개 사업, 3조 3,7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9〉 기후예산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6년도 제출안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54	3,371,530	255	3,095,982	275,547	8.9
예 산	242	3,329,746	244	3,053,281	276,464	9.1
일반회계	120	702,708	101	811,098	△108,390	△13.4
특별회계	122	2,627,037	143	2,242,182	384,855	17.2
기 금	12	41,783	11	42,701	△917,301	△2.1

※ 자료근거 :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7

- 기후예산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감축사업 1조 9,251억 1,000만원(131개 사업), 배출사업 6,246억 1,300만원(56개 사업), 혼합사업 8,218억 600만원(67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실·본부·국별로는 23개 실·본부·국, 254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그러나 기후예산제의 경우, 교통실 27개 사업(1조 1,733억 5,900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9개 사업(5,634억 8,400만원), 기후환경본부

51개 사업(4,624억 3,800만원), 재난안전실 23개 사업(2,711억 7,1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기후예산의 73.3%, 2조 4,704억 5,200만원 이 4개 실·본부·국에 집중되고 있음

- 기후예산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달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 및 기금이 투입되는 전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0〉 기후예산 사업별 총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사업	2026년도 제출안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54	3,371,530	100.0	255	3,095,982	100.0	275,547	8.9
감축사업	131	1,925,110	57.1	121	1,833,211	59.2	91,898	5.0
배출사업	56	624,613	18.5	103	900,966	29.1	△276,352	△30.7
혼합사업	67	821,806	24.4	31	361,804	11.7	460,001	127.1

※ 자료근거 :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7

〈표 2-41〉 실·본부·국별 기후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명	2026년도 제출안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증감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사업수	예산액 및 지출계획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254	3,371,530	100.0	255	3,095,982	100.0	275,547	8.9
여 성 가 족 실	7	62,232	1.8	7	57,444	1.9	4,787	8.3
소 방 재 난 본 부	3	14,174	0.4	4	10,370	0.3	3,804	36.7
경 제 실	4	44,538	1.3	6	37,511	1.2	7,027	18.7
복 지 실	8	39,462	1.2	8	69,824	2.3	△30,362	△43.5
교 통 실	27	1,173,359	34.8	33	969,666	31.3	203,693	21.0
기 후 환 경 본 부	51	462,438	13.7	38	477,797	15.4	△15,360	△3.2
문 화 본 부	10	75,194	2.2	10	60,169	1.9	15,025	25.0
관 광 체 육 국	6	18,233	0.5	4	30,900	1.0	△12,667	△41.0
평 생 교 육 국	3	11,564	0.3	2	1,791	0.1	9,773	545.7
시 민 건 강 국	2	12,632	0.4	1	9,044	0.3	3,588	39.7
민 생 노 동 국	5	51,521	1.5	4	21,476	0.7	30,045	139.9
미래공간기획관	3	43,113	1.3	4	42,289	1.4	823	1.9
디 자 인 정 책 관	4	5,288	0.2	3	6,100	0.2	△812	△13.3
재 난 안 전 실	23	271,171	8.0	26	275,877	8.9	△4,706	△1.7
주 택 실	16	114,492	3.4	16	92,026	3.0	22,466	24.4
도 시 공 간 본 부	1	10,563	0.3	-	-	-	10,563	-
균 형 발 전 본 부	4	36,612	1.1	6	68,706	2.2	△32,094	△46.7
정 원 도 시 국	45	150,512	4.5	49	227,615	7.4	△77,102	△33.9
물 순 환 안 전 국	5	72,095	2.1	6	26,115	0.8	45,980	176.1
도시기반시설본부	9	563,484	16.7	7	483,220	15.6	80,264	16.6
서울아리수본부	9	120,134	3.6	11	109,503	3.5	10,632	9.7
미 래 한 강 본 부	7	15,543	0.5	9	18,101	0.6	△2,559	△14.1
자치경찰위원회	2	3,175	0.1	1	438	0.0	2,737	625.0

※ 자료근거 : 「2026 회계연도 기후예산서(안)」, p.8

6)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6~2030)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24년도 예산편성 기준의 보완사항인 예산안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한 바 있어 '24년도부터 예산안 제출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공유재산 가액을 '24년 12월 기준, 143조 9,806억원으로 토지(82조 77억원), 건물(9조 2,246억원), 기타재산(45조 7,248억원), 건설중인 재산(6조 6,234억원)으로 제출하였음

〈표 2-42〉 서울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단위 : 천㎡, 억원, %)

구분		수량	면적 (천㎡)	재산가액(억원)	비율(%)
합	계	49,474,106	129,916	1,439,806	100
토 지 (필지)	소 계	58,423	109,338	820,077	57.0
	대	11,440	4,321	125,438	8.7
	전	2,713	1,877	6,976	0.5
	답	1,773	1,060	5,263	0.4
	임 야	4,587	22,079	38,757	2.7
	기 타	37,910	80,002	643,644	44.7
건 물 (동·호)	소 계	77,065	13,385	92,246	6.7
	사 무 소	808	1,711	11,526	0.8
	주 택	73,842	7,039	49,181	3.4
	기 타	2,415	4,634	35,540	2.5
기 타 재 산	소 계	49,338,367	7,193	457,248	31.7
	입 목 죽(주)	3,931,428	-	2,176	0.2
	공 작 물(점)	155,723	-	269,738	18.7
	기계기구(점)	20,821	-	9,418	0.7
	선 박(척)	44	-	209	0.0
	항 공 기(대)	4	-	161	0.0
	무 체 재산(건)	1,254	-	16	0.0
	유 가 증 권(주)	45,227,701	-	174,207	12.1
	용 익 물 권(건)	848	7,193	1,148	0.1
	회 원 권(건)	544	-	175	0.0
건 설 중 인 재 산 (건)	251	-	66,234	4.6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첨부서류 ('25.11), p.203

7)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6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여 85개 세부사업, 2,817억 1,6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과 비교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여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공사 구간이나 공정을 달리하여 명시이월이 요청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 처리 후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는 세출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단계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여 한정된 세출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43〉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2 0 2 5 년 도 예 산 액	명시이월 요청액 (2025→2026)	2 0 2 6 년 도 예 산 액
총	계	85	(X247,127) 1,015,900	(X55,254) 281,716	(X159,982) 710,554
	일 반 회 계	36	(X36,537) 269,408	(X8,817) 78,852	(X7,724) 146,425
	특 별 회 계	49	(X210,590) 746,492	(X46,437) 202,863	(X152,258) 564,129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5	(X123,258) 353,721	(X11,776) 29,622	(X74,014) 264,784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5	(X-) 81,767	(X-) 28,186	(X-) 59,292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	(X-) 1,350	(X-) 1,184	(X-) 40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	(X54,873) 88,494	(X12,977) 20,655	(X54,872) 104,644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3	(X30,036) 193,516	(X19,735) 115,934	(X22,121) 133,757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3	(X2,423) 27,642	(X1,948) 7,282	(X1,250) 1,25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3042 ('25.11.13)

(2) 실·본부·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여성가족실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운영 (사업별설명서 p.69)

- 동 사업은 ①오케이존 참여업소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 ②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원과 ③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 참여비 성격의 사무관리비 1억 3,500만원을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4〉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50
사무관리비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대응 대시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등 활용 홍보 추진 95 - 서울베이비앰버서더 운영 24 -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 - 정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4 				13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케이존 참여업소 지원 (300,000원×50개소) 				15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언론홍보 				300

-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한 **오케이존 참여업소 지원**은 사업근거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기재한 바,
 - 동 조의 내용은 ‘시장은 아동과 동반 보호자 등이 편안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서울시가 민간업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조례의 다른 조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 조의 경우에만 민간업소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통해 자치구를 지원하거나 자치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례상의 근거는 불비된 상태로 판단되는 바,
 - 관련 법령은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도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편성요청된 대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를 지원하거나 자치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소요예산이 편성 요청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 편성요청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예산심사과정에서 민간업소에 직접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과목을 수정하여 조례의 불비점을 상쇄시키는 방안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언론홍보를 위하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언론홍보비는 일반회계로 편성** 하고, 홍보를 위한 콘텐츠는 양성평등가족기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검토됨

- 관련 법령에는 기금은 일반회계 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고, 일반회계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언론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비가 사업내용이 다를 지라도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향후에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유사한 사업 목적의 소요예산을 분산하여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45〉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의 유사 편성 사례

구 분	일 반 회 계	양 성 평 등 가 족 기 금
사 업 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운영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
사 업 내 역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언론홍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 제작
예 산 과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 산 액	3억원	1억 2,100만원
편성 사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언론 홍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 등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69, p.849 재구성

-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의 경우,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을 선발하여 “서울베이비 앰배서더” 활동비(원고료 월 20만원) 등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나,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사무비용 즉, 물건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적절한 예산과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별설명서 p.60)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4에 근거한 사회보장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67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368억 3,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6〉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6,832
사 무 관 리 비				13
◦ 사업홍보, 매뉴얼 제작 등				13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1
◦ 양육지원 관련 업무추진				11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취 약 계 층 , 지 방 재 원)				36,774
임산부 교통비 지원				
- '25년 미사용자 (24,330명×350,000원)				8,515
- '26년 사용대상자				28,259
▷ '26년 상반기 신청자				18,839
• 첫째 (17,544명×700,000원)				12,280
• 둘째 (6,987명×800,000원)				5,589
• 셋째 이상 (969명×1,000,000원)				969
▷ '26년 하반기 신청자				9,419
• 첫째 (17,544명×350,000원)				6,140
• 둘째 (6,987명×400,000원)				2,794
• 셋째 이상 (969명×500,000원)				484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8
◦ 보조금 실적보고서 검증 용역				8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25
◦ 자치구 사업 홍보 (1,000,000원×25개 구)				25

- 동 사업은 임산부가 교통비 바우처 신청시 선택한 교통카드를 통해서 유류비,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교통비를 포인트(현금)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하여 '22년도에 최초 시행한 바,
 - 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대상 요건 및 사용처 등을 확대하여 '25년 9월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첫째아 70만원, 둘째아 8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하고, 상한액도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도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관련 조례에서는 '시장은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26년도 예산안에는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8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요청한 바,
 -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근거가 불비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 사전 협의만을 이행하고, 소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앞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관련 조례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금번 제333회 정례회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바, 조례 개정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야 소요 예산에 대한 편성 요청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 필요**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별설명서 p.324)
 - **아동수당 지원** (사업별설명서 p.604)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별설명서 p.725)
- ①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② **아동수당 지원**, ③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국고보조 사업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면서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모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 ①**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에서 86개월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사업(국:시:구비 분담)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1억 7,000만원(국비 135억 6,500만원 포함)**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 ②**아동수당 지원**은 만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사업(국:시:구비 분담)이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11억 1,800만원(국비 3,007억 6,200만원 포함)을 편성요청 하였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301 일반보전금	<p>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p> <p>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p> <hr/> <p>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p> <p>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p> <p>※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p>
-----------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 또한 ③**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시비 100%)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8억 6,2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23년 7월, 사회보장사업은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설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4년도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음에도 보완되지 않고 있는 바,

- 여성가족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산안 심사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유사한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8〉 24년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 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생략) <신 설>	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 (생략) ※ 국고보조사업 예산은(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포함) 모두 301-01 통계목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모두 301-01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생략) <신 설>	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 (생략) ※ 단,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 관련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 ※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전 주민 지원 외 복지사업)은 모두 301-02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생략) <신 설> <신 설>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생략) ※ (광역)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시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등이 아닌 301-03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은 301-02에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은 301-01에 편성 ※ 전 주민 대상 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 301-03에 편성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전 주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3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3.7), p.31

□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720)

- 동 사업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공예식장을 운영하고 결혼장려금 비품비 등을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1억 3,100만원)와 사회보장적수혜금(4억원) 등 6억 5,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56
사 무 관 리 비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및 홍보비 등 24,300,000원 = 24,300천원 ◦ 시민참여 공모 결혼식장 조성 자문료 1,000,000원×5개소 = 5,000천원 ◦ 첫예식 연출비 지원 3,000,000원×34개소 = 102,000천원 				24 5 102
사 회 보 장 적 수 혜 금 (취 약 계 층 , 지 방 재 원)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장려금 비품비 지원 (1,000,000원×400건) 				40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식장 언론 홍보 				125

-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은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예식장을 활용하여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

- 가족담당관에서는 대관료 무상 지원과 비품비(100만원 이내), 결혼식장 연출비(3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민간협력 사업으로 커플당 웨딩 검진비(100만원 이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예비신혼부부에게 결혼 장려금(비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 사업에 해당되어 지난 '24년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금년도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비품비를 지원하였으나, '26년도에는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전달체계를 변경하였고,
 - '25년 5월, 공공예식장 대관료 무상사용 대상자를 '예비부부 한 명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서 '서울시 거주자·생활권자 및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보건복지부에 사업부서가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대관료 감면사항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된 사례는 없으나, 협의절차에 따라 검토를 정식으로 의뢰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동식 주택의 무상양여 및 창업자 임차료 지원**에 대해 사회보장 사전협의를 이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편성에 앞서 사회보장 협의가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편성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이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 등 재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요청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편성 요청한 첫 예식 연출비 지원의 경우, 신규 웨딩홀을 홍보하기 위하여 신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예비부부에게 연출비(300만원×34개소)를 지원하고자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비는 결국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사업으로 사료됨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바,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 즉, 성질상 물건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의 편의적 편성은 지양하고,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0〉 사무관리비의 내용

20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식비 6. 임차료 7. 일반용역비 8. 관리용역비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5. 7), pp.87~91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부적정 편성 사례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88)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 (사업별설명서 p.26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사업별설명서 p.61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763)
- 관련 법령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①인건비, ② 사무관리비, ③임차료, ④그밖에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고,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에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와 자본사업비를 구분하고 있음
- 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국비 분담(5:5)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7억 5,700만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이고,
- ②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자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2억 7,600만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 ③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289억 5,900만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이고,
 -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114억 6,400만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의 소요예산 중 운영비 성격의 비용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할 수 있으나,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비까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예산 편성 사례로 판단되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중 ‘사업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 조	
	산 출 기 초	소 요 예 산
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88)	○ 사업비 (20개소)	40
	○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35
②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자 체) (사업별설명서 p.260)	○ 사업비	42
	-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특화 사업	53
③ 지 역 아 동 센 터 운 영 지 원 (자 체) (사업별설명서 p.612)	○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 - 아동 12,000명×16,000원×2회	384
	○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지원 - 긴급 일시돌봄 서비스 지원	150
	○ 내꿈은 크리에이터 과정 운영 - 콘텐츠 교육지원	24
	○ 간식비 지원	517
	○ 지역아동센터 전환시설 지원사업 (방과후 전담어린이집)	432
④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763)	○ 사업비	753

2) 글로벌도시정책관

□ 30일간의 서울일주 (사업별설명서 p.29)

- 동 사업은 서울시 거주 외국인 유학생 등 300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직무과정, 기업탐방, 전통문화 및 K-컬처 등에 대한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 2억 9,000만원중 2억 8,200만원을 위탁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 사무관리비의 97.2%를 사인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공공사무중 일부에 대해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한 사업추진방식으로써 공공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어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24년 12월, '25년도 예산안 심사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서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매년 6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제출기한마저 준수하지 못하여 “법정기한 미준수 소명서”까지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부서가 시의회로부터 문제요인이 제기된 이후에도 약 1년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지 않다가 '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임박해지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행태는 제출시기의 적정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 더욱이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일반안전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이 경우, 12월 중순이 되어 서야 협의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열거된 사전절차를 사업부서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초래한 사례로 판단됨

〈표 2-5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90
사 무 관 리 비				282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인건비 3,500,000원×4명×3개월×2회				84
○ 문화 탐방 활동비 200,000원×150명×2회				60
○ 산업탐방비 5,000,000원×2회				10
○ 사진 및 영상 촬영비 1,500,000원×4회×2회				12
○ 홍보인쇄비 4,500,000원×2회				9
○ 우수과제 책자 제작 2,500,000원×2회				5
○ 교육프로그램 강의로 600,000원×30명×2회				36
○ OT/수료식 운영 5,000,000원×2회				10
○ 교육 이수자 기념품 등 15,000,000원×2회				30
○ 취업지원비(행정사 상담비, TOPIK응시료 지원등) 3,000,000원×2회				6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8
○ 유학생 정착 지원 간담회 개최				8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별설명서 p.127)

- 동 사업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15억 4,100만원과 사무관리비 3억 4,900만원이 포함된 38억 2,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822										
	사	무	관	리	비	349								
				◦ 그룹홈(1개소) 임차료 및 보증금 증액분 지원	24									
				- 증액보증금 500,000원×3호	1									
				- 임차료 484,854원×4호×12개월	23									
				◦ 자활지원센터(1개소) 이사비용	30									
				- 시설 임시이전 이사 비용 30,000,000원×1회	30									
				◦ 자활지원센터(1개소) 임시이전시설 보증금, 월세, 관리비	294									
				- 관리비 200,000원×8채×4개월	6									
				- 월세	39									
				▷ 주거시설 월세 697,910원×8채×4개월	22									
				▷ 사무실 월세 1,400,000원×3채×4개월	16									
				- 보증금	249									
				▷ 주거시설 보증금 30,000,000원×8채	240									
				▷ 사무실 보증금 3,000,000원×3채	9									
	공	공	운	영	비	0.9								
	민	간	위	탁	금	1,541								
	사	회	복	지	시	설	법	정	운	영	비	보	조	1,770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160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등의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은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은 통상적인 경상운영비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으로 보아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관련 매뉴얼에도 예산편성 시 주의사항으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월세(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보증금은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비와 시설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전세금 등 자본적 성격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적정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편성요청한 보증금(2억 5,000만원)은 적정 예산과목인 **기타자본이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등 자본적 성격을 갖는 비용은 동일하게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하여 예산과목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미래청년기획관

□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별설명서 p.61)

- 동 사업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서울거주 만 19~39세 청년 100명에게 1개월간 해외 봉사활동을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9억 6,8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표 2-5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968
사무관리비				968
○사업 운영기관 용역비			963,000천원	963
- 전문가파견경비			105,000천원	105
- 사업운영지원비			150,000천원	150
- 단원 모집 선발 및 홍보			210,000천원	210
- 교육경비			90,000천원	90
- 단원지원비			368,000천원	368
-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40,000천원	40
○사업 추진 관련 심사비 등			5,000천원	5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이나, 다음의 사유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관련 조례 제19조는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강행규정이나,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은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로 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만19~39세 청년에게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집행할 수 없는 바,
 - 사업부서는 「예산편성기준」을 우회하고자 사무관리비 집행을 통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국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위법편성한 사례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회계질서문란 행위로 판단됨
 - 만일 동 편성 사례가 용인된다면, 향후 국외여비 뿐만 아니라 국내여비 일체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맡긴다면 관련 여비심사규정이나 공무원여비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남용 될 수 있어 성질이 다른 경비까지 사무관리비로 포괄하여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셋째, 이미 지난 '24년도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는 당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이 국외여비성 경비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음에도

-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문제요인을 해소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삭감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이 전제된 것임은 물론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행태일 수 밖에 없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성 경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 필요시 소요 예산이 편성요청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 넷째, 사무관리비는 부서의 유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써 부서 운영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①냉온수기 소독, 방역 등에 한정되는 **소규모 용역**이나, ②사업부서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영상자료 제작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용역비**, ③청사의 시설관리, 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대행시키는 **관리용역비**로 한정되어야 하며

- 소규모 용역이라 할지라도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중 일부 부수적인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가 적정할 것임에도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9억 6,300만원)을 용역계약을 통해 공공의 역할 전부를 민간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만 주면, 업체가 알아서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어 공공의 책무를 스스로 축소 시키는 편성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획조정실

□ **전문가 중심의 규제개선 심사 및 분석** (사업별설명서 p.291)

- 동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규제개선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9,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92
사 무 관 리 비				92
○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92
- 심사단 수당				91
▷ 총괄분과				43
▷ 사업분과				48
- 회의 운영 및 자료 제작 등				1

- 관련 법령에서는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관련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을 위한 재원은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편성·지출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 서울시는 지난 10월 18일, 금번 제333회 정례회 안건으로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11월25일 소관 기획경제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5) 소방재난본부

□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361)

- 동 사업은 재난 대응 시 통신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용 등 공공운영비 5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4,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141
사 무 관 리 비				173
	◦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81
	◦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매			55
	◦ 소방무선국 신규허가 및 재허가 수수료			37
공 공 운 영 비				551
	◦ 현장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료			324
	◦ 무선중계국 임차료 및 전기요금			227
	- 임차료 (40,000,000원×5개소)			200
	- 전기요금 (2,250,000원×12개월)			27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416
	◦ 유선통신장비 보강			143
	◦ 무선통신장비 보강			272

- 편성요청된 공공운영비에는 무선중계국 임차료 2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선중계국 임차료(2억원)는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경제실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160)

- 동 사업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시설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보수하고자 사무관리비 46억 6,900만원을 포함한 431억 4,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3,143	
사	무	관	리	비	4,669
◦ 특화캠퍼스 운영				4,669	
공	공	운	영	비	20
◦ 캠퍼스 재해복구 및 영조물 보험료				20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37,387	
◦ 인건비				3,497	
◦ 대행수수료				524	
◦ 사업비				33,365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1,066	
◦ 캠퍼스 개보수				1,066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은 소프트웨어 기반 기본·심화교육 제공 등을 위해서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73억 8,700만원을 편성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인공지능 분야의 AI교육은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추진하고자 특화사업 전체 사무를 사무관리비로 편성 요청한 바,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가 부서의 유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경비이자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부 사무에 대한 소규모 용역임을 감안할 때, AI특화 캠퍼스 사무 전체를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의 편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됨

〈표 2-58〉 사무관리비의 범위 예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식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이하 생략)
	공공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및 제세

- 아울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26년도 사무관리비 46억 6,900만원을 검토하면, 330명에 대한 취업지원비(1인당 50만원) 1억 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취업지원비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사회보장성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목적 사업인 경기도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23. 9), 경기도 고양시의 **청년 취업지원 사업**(’23. 1) 등도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표 2-59〉 년도별 청년취업사관학교 SI특화캠퍼스 소요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26년도 산출내역		'25년도 산출내역	
총계	세부내역	4,669	세부내역	3,300
인건비	직원 인건비	731	직원 인건비	750
재료비 등 경비	교육운영비 (SW사용료, 강사료 등)	3,125	교육운영비 (SW사용료, 강사료 등)	1,881
	취업지원비 330명×1회×500(천원)	165	취업지원비 300명×1회×450(천원)	135
	홍보비	330	홍보비	300
	관리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297	관리경비 (용역비, 공공요금)	216
	기타경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잡비 등)	18	기타경비 (출장비, 사무용품비, 잡비 등)	15
	회계정산료	3	회계정산료	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17837 ('25.11.21)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특화캠퍼스 운영은 최초 시작 연도인 '25년도에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6년도 예산안 제출 시점인 지난 10월 31일까지도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회보장성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우회수단으로 활용한 것일 수 있어 편성 요청한 사무관리비중 취업지원비(1억 6,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협의를 이행한 이후에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 (사업별설명서 p.441)

- 동 사업은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해외 패션위크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6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사	무	관	리	비	640
		○ 국내 패션브랜드 해외 패션위크 연계 프로그램 참여			640	
		- 인건비 15,000,000원×2명			30	
		- 프레젠테이션 기획 및 공간 연출 235,000,000원×2회			470	
		- B2B 세일즈 기획 운영 30,000,000원×2회			60	
		- 해외 홍보마케팅 30,000,000원×2회			60	
		- 일반 관리비 등 10,000,000원×2회			20	

-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 6억 4,000만원은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전 콘텐츠 제작, 전시 기획 및 공간 연출,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인 바,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사무비용에 해당하는 기본경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용역비는 ①채용 또는 영상자료 제작 등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용역비와 ②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관리용역비로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비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은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중 부서의 유지·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로 한정됨

- 더욱이 동 사업은 **사무관리비**를 편성요청한 것임에도 사업내용이나 추진방식은 오히려 위탁이나 대행의 형태에 근접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어야 하는 예산과목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과목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의 전부를 사인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집행하는 것은 공공사무중 일부에 대해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일반 또는 관리용역과 달리 동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사업의 기획 및 운영 일체의 과정을 민간 부분에 맡기는 것으로, 이는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축소 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어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례는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위원회는 이미 동 사업에 대해 지난 '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동일한 내용을 지적한 바,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이른바 '유사 용역'에 대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여전히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의 지적사항에 주의하지 않는 행태로써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서울시제조지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445)

- 동 사업은 지역 소공인을 지원하고자 서울시제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 37억 7,300만원을 포함한 44억 7,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4,476
사 무 관 리 비				3,773
◦ 관리운영용역				2,834
◦ 임차료 및 관리비				916
◦ 감정평가 및 구조안정성 검사 등				21
공 공 운 영 비				76
◦ 공공요금				76
시 설 비				610
◦ 강북패션제조지원센터 신규조성 및 이전원상복구 따른 공사비				610
감 리 비				13
◦ 강북패션제조지원센터 신규조성 및 이전원상복구 따른 감리비				13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4
◦ 서울시제조지원센터 필요장비 구입				4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에는 임차료 및 관리비 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은 **기타자본 이전**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료 및 관리비중 임차보증금으로 활용되는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기타자본 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복지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사업별설명서 p.330)

- 동 사업은 장애당사자 개인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40만원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억원이 포함된 3억 8,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382
사무관리비						182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용역						159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20
◦ 자문회의 운영비						2
◦ 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00
◦ 사업참여자 개인예산 지원 (100명×400,000원×5개월)						20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24년도에는 시범운영 등을 사유로 사회보장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25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5년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에 대한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재 국비 분담 사업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등도 시행중에 있고, 동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향후 정부 사업과의 정합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로 통보된 바,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사업과 시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원의 한정성이 고려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동 사업의 명시적인 추진 근거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시니어일자리원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811)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 시니어일자리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23억 7,900만원이 포함된 23억 8,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①공공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 불비, ②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이행, ③위탁하려는 사무와 수탁기관의 사무범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후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표 2-6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2,389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2,379		
	○	인건비		630		
	○	운영비		10		
	○	사업비		1,738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		
	○	PC 구입비		9		

- 첫째, 시니어일자리원센터 운영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 맡기려는 것이나, 조례상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음
- 동 사업의 추진 근거인 관련 조례는 노인 일자리 사무를 노인 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통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 관련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임
- 그러나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①**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와 ②**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이른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상호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법제처의 경우에도 ①**공공단체**에 대해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①**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고, 대법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①**공공단체**로 판결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인 어르신복지과는 관련 조례중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문에 대해 ‘민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문언상 법인격을 가진 공공의 출연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 현행 관련 조례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①**공공단체**를 통한 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고 있고, 법제처는 물론 대법원 또한 출자·출연기관이 ①**공공단체**임을 판결한 바 있으며
- 심지어 여성가족실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5년 1월부터 ①**공공단체**인 출자·출연기관에 ‘공공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한 바 있음
- 더욱이 우리 위원회는 이미 '25년도 예산안 심사시 관련 조례에는 ①**공공단체**인 출자·출연기관에 공공위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 사업부서는 지난 1년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26년도 예산안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반복적으로 편성 요청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법령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적용을 지속하는 행태인 것은 물론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시의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일 수 밖에 없어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현행 관련 조례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만 있고, ①**공공단체**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조례에 공공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무의 위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완료되지 않아 소요예산 편성이 불가함

- 동 사업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맞춤형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인턴 지원금(1인당 최대 225만원)과 채용 지원금(1인당 100만원 일시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사업인 바,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협의를 완료한 이후 필요시 소요 예산이 편성요청 될 사안으로 판단됨

○ 셋째, 위탁하려는 사무와 수탁기관의 사무범위가 불일치함

- 사업부서가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요청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되나,

〈표 2-64〉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안)

구분	적용대상	세부지원내용	시행	비고
시민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소재 기업	·인턴지원금 1인당 최대 225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1인당 100만원 일시금 지원	'26.1월	신설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15183 ('25. 7.14) “서울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 요청”

- 65세 미만의 중장년층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의 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탁기관 조차 걱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 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도 50플러스재단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으로 이메일을 통해 회신하였으나,
 - 동 조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입법예고된 바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수탁 범위가 조정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확인불가한 내용을 회신한 사업부서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①공공위탁에 대한 조례상 근거 불비, ②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이행, ③위탁하려는 사무와 수탁기관의 사무범위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이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요예산이 편성요청 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시니어 동행상점** (사업별설명서 p.826)

- **시니어 동행상점**은 민간상업시설을 어르신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비혼잡시간대에 특화프로그램을 할인가로 제공하는 참여업소에 환경 개선비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5〉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120
사 무 관 리 비						10
◦ 동행상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 등						1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10
◦ 동행상점 신규 참여업소 환경개선비 (110개소×1,000,000원)						110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가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나, 금번 예산안 제출시점('25.10.31)까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1인 가구 동행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21)

- 1인 가구 동행서비스 운영은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이사, 마음 동행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6〉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550
사 무 관 리 비				1
◦ 보조사업자 선정 (200,000원×7명=1,400천원)				1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549
◦ 1인가구 동행서비스 운영				1,549
- 상시서비스 제공 인력 인건비 (3,011,762원×26명×12개월)				939
- 시간제 동행매니저 수가지급 (16,775원×4시간×24회×5일×12개월)				483
- 동행서비스 운영비				126

- 동 사업은 1인 가구에 대해 상담, 돌봄 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1인 가구 동행서비스 운영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사업으로 유사사업인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4년 11월, 사회보장 제도 관련 사전 협의를 이행한 바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안 편성 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행되어야

하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사회보장 사업이 아닌 민간 보조사업으로 인식하여 보조금을 편성하고자 관련 법령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사업은 보조금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법정서류인 사업별설명서에는 ‘적정’으로 사실과 다른 결과를 기재하고 있어 동 사업별 설명서의 사업 내용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동행서비스 운영**은 돌봄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돌봄 SOS 사업 운영**과 유사·중복됨을 지적하고, 이용자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 사업 방침서를 검토하면 사업대상을 모든 1인 가구로 명시하면서 노노부부, 조손가정 등 다인 가구라 하여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인 경우까지도 동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은 **돌봄 SOS 사업 운영** 등과 사업 내용 중복 등을 해소하고, 예산안 사전절차인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이후 필요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 필요**

-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사업별설명서 p.874)
- 장애인개인예산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p.335)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별설명서 p.542)

○ 고독대응과 소관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외부활동을 유도하여 고립·은둔을 완화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7,400만원) 등 7,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5년도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25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사업임

〈표 2-67〉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6,175
사무관리비				1,800
◦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회의운영비 등				1,8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375
◦ 적립금 (15명×25개소×30천원×6개월)				67,500
◦ 적립금 운영비 (275천원×25개소)				6,875

-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개인예산제 운영**은 개별화된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자 국·시·구비가 분담(50:32:18)하는 사회보장 사업으로 국비 1억 7,000만원이 포함된 3억 1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8〉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301
	◦ 사업참여자 개인예산 지원									301

-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6세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시비 분담(50:50) 사회보장사업으로 국비 82억 2,400만원이 포함된 164억 4,8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69〉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16,448
	◦ 방과후 활동 돌봄서비스 지원 바우처									16,448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국고보조 사업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면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이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장애인개인예산제 운영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비 분담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 사전 통보 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통보되어 사회보장사업임에도 사업부서가 동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24년도부터 사회보장사업 예산에 대한 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하였음에도
-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전통보 시 여전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내시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기준과는 불일치할 수 밖에 없어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는 적정 예산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내시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70〉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301 일반보전금	<p>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p> <p>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p> <hr/> <p>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p> <p>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p> <p>※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p>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8) 교통실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전환사업) (사업별설명서 p.411)

- 동 사업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안전 확보 관련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0억 6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82억 7,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8,271
사무관리비				1,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190
공공운영비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운영비 				266
시설비				16,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확대지정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8,7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 개선 				2,850
감리비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 설치공사 감리 				270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에 따르면 사업별로 발주부서 자체심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예산안 제출일('25.10.31) 이후 현재까지도 기술용역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1년도 서울시 보호구역 교통안전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시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용역타당성 심의를 이행하였고, 예산과목도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나,
 - '26년도의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목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르면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난 11월24일, 사업부서는 '26년도에 추진하려는 ‘서울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은 표준모델 설계 및 도면작성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 지난 10월31일 예산안이 제출되고, 20여일 이상 경과한 '25년 11월말 현재까지도 관련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26년도 예산안중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업부서의 과업내용을 확인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 소요예산을 승인하기에 앞서 과업내용중 표준모델 설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운영 및 교육 지원** (사업별설명서 p.305)

- 동 사업은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교통문화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6억 4,300만원 등이 포함된 18억 4,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844
공 공 운 영 비				3
○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화재보험)				3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198
○ 사업비(교육비, 교통연수원)				198
- 고급택시 보수교육(4,000명×11,000원)				44
- 법인택시 보수교육(14,000명×11,000원)				154
민 간 위 탁 금				1,643
○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위탁금				1,643
- 인건비				1,260
- 운영비				79
- 사업비				271
▷ 프로그램사업비(교육비)				189
▷ 자본형성적사업비				82
- 일반관리비				32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민간위탁금에 편성요청된 사업비에는 프로그램사업비(교육비)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교체를 위한 자본형성적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검토되나, 사업부서는 지난 '2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본형성적 사업경비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도 “자본형성적사업비”로 명시되어 있어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분리하여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9) 기후환경본부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별설명서 p.273)

- 동 사업은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급속 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2억 9,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50억 6,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비고
계				15,06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	
○ 전기차 충전기 민원 응대 및 현장 점검 등 지원				55	
사무관리비				29	
○ 전기차 충전기 시민신청 등 홍보				18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수당				8	
○ 충전료심의위원회 개최 수당				3	
민간경상사업보조				135	
○ 서울시 인증 충전기 운영비 지원(민간사업자)				135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361	
○ 시 소유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				4,106	
○ 급속충전기 인증제 추진				224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홍보 등				30	
민간자본사업보조				6,186	
○ 민간 급속충전기(택시포함) 설치비 지원				1,560	
○ 민간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600	
○ 전기버스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2,400	
○ 민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 설치비 지원				1,600	
○ 지방보조사업 감사인 지정제 검증 수수료				26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297	
○ 전기차 충전기 AI 화재 감시시스템 구축				650	①
○ 시 소유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3,647	②

○ 편성요청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중 ①전기차 충전기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6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 관련 규칙 등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지난 7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 제출된 예산안중 ①전기차 충전기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예산을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지난 7월,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6억 3,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①전기차 충전기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자 제출한 6억 3,600만원으로도 추진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지난 10월31일 제출한 예산안에는 6억 5,000만원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①전기차 충전기 AI 화재감지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6억 5,000만원을 적정규모로 신뢰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6년도에는 시 소유 급속충전기 35기를 구축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6억 4,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5년도에는 140기 분량, 9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년도에는 35기 분량, 33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하여 구축하려는 것임

〈표 2-74〉 소요예산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 0 2 6 년 도		2 0 2 5 년	
(예산안)	4,297	(최종예산)	11,112
○시 소유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3,647		
- 충전기 구축 비용 94,514천원×35기	3,307	○시 소유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68,700천원×140기	9,618
- 업무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66,	○업무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192
- 충전기 구축 인건비	272	○충전기 구축 인건비	301
○전기차 충전기 AI 화재 감시시스템	650	○충전소 안전시설 설치 지원(공공) 5,000,000원×200개소	1,000

-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부서가 구축한 시 소유 급속충전기중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200kW급 충전기의 경우, 인접한 S사의 급속충전기와 비교하면 월별 이용현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급속충전기가 금년 3월 설치되어 초기 이용률이 낮을 수 있고, 급속충전기 운용사별 충전요금 결제 환경 등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표 2-75〉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내 200kW 급속충전기 이용 현황

충전기 운용기관 (운영사)		2025년도 월별 이용 실적(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서울에너지공사	1번	-	17	77	64	74	61	100
	2번	-	17	39	55	69	41	65
S사	1번	485	343	526	516	605	523	527
	2번	403	451	410	375	441	285	317
	3번	433	420	177	191	225	318	302

※ 자료근거 :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6118 ('25.11.19)

-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내 서울시 급속충전기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충전 요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투입구가 지상으로부터 180~190cm 높이에 있고, 급속충전기 최하단부 조차도 지상으로부터 60~70cm 높이로 설치 되어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사료됨



※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 내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급속충전기

- 물론 우수지라는 특성상 급속충전기를 의도적으로 높게 설치한 것일 수 있으나, 인접한 민간운영사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높이와 비교하여도 이 용이 제약될 만큼 부적절한 높이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6,870만원('25년도 기준 급속충전기 1기)의 서울시 예산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집행된 사실보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마포우수지 공영주차장내 서울시 급속충전기**에는 “서울특별시”가 인쇄되어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현상이 시민들께 여과 없이 노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는 설계와 시공에는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급속충전기가 부적절한 높이로 설치됨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에 대해서 만큼은 ①시공사인 A전기, ②감리사 B엔지니어링, ③사용승인 책임이 있는 사업부서, ④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서울에너지공사, ⑤마포우수지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별설명서에는 사업의 기대효과를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충전 불편을 체험’하는 사례일 수밖에 없고, **마포우수지 공영주차장내 서울시 급속충전기 설치 사례처럼 부적절하게 구축된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 재정책임성이 담보되도록 편성요청된 **공기관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충전기 구축비용 33억 700만원에 대해 일부 삭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26회계연도 개시이후, ’25년도중 설치한 급속충전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편성 요청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별설명서 p.484)

- 동 사업은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각종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11억 9,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1,192,247						
사	무	관	리	비	1,250					
	◦ 노사문제 상담			1,250						
공	공	운	영	비	0	29,397				
	◦ 전기, 수도, 가스, 상하수도, 무인경비 등			29,397						
행	사	운	영	비	105,000					
	◦ 환경공무원 소통 행사 지원			10,500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3600	
	◦ 노사관계 업무추진			3,600						
연				구	용	역	비	150,000		
	◦ 환경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추진			150,000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853,000	
	◦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853.000						
	- 설,추석 명절 격려품			257.000						
	- 순직자 위로금 지원			20.000						
	- 산업시찰 및 문화유적지 견학 지원			248.000						
	- 휴양소 지원			228.000						
	- 안전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0						
시	설			비	400	50,000				
	◦ 청운복지회관 시설개선 공사			50,000,000						

- 사업부서는 자치구 환경공무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됨에 따라 임금체계 전면 재설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학술용역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학술용역 주무부서로부터 “법, 노무전문가 자문 등 부서 자체수행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회신된 바,

〈표 2-77〉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결과 ('25. 2)

연번	부서명	과제명	신청방식	결정방식	보완의견
19	생활환경과	환경공무원 임금체계변화 및 개선방향연구	학술용역() 서울연(✓)	학술용역() 서울연() 자체수행(✓) 보류()	법, 노무전문가 자문 등 부서 자체수행으로 추진

- 관련 지침에는 학술용역의 유형을 ①위탁형, ②서울연구원 연구과제, ③공무원 직접수행, ④자문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의 수행방식과 ㉡결정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더욱이 관련 지침에서도 첫 절차인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최종 절차인 **결과활용보고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51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기에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용역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용역 건의 경우, 지난 2월 학술용역 사전검토 결과 자체수행으로 결정된 9건의 과제중 유일하게 학술용역 사전심사결과를 소요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과 사업별설명서에도 “공무원 직접수행”은 일절 기재하지 않고,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만 기재하고 있음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함에도

사업부서가 환경공무원 임금개편 및 개선방안 용역의 필요성에 집중하여 사실관계를 누락시킨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학술용역 사전검토결과 공무원 직접추진으로 결정된 사업추진방식 조차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사업부서가 학술용역 사전심사제도를 부정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 관련 용역의 긴급성이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사업부서에 대한 행정적 패널티가 검토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사업부서 입장에서 환경공무원 임금개편 및 개선방안 용역이 시급한 현안이며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어 부득이 학술용역 사전심사결과와는 상반되게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는 부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도

■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면 지난 3월, “자체수행”으로 회신된 이후 학술용역 계획안을 보강하여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업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사전심사를 하고 있고, 동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전심사에서 외부기관에 대한 용역이 아닌 공무원 자체수행으로 결정한 사안이나, 공무원이 직접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추진방식과 적정 예산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문화본부

□ 공연상주단체 육성지원(전환사업) (사업별설명서 p.228)

- 동 사업은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억 3,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038
공 기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2,038
◦ 사업 지원금				1,870
◦ 사업 운영비				118
◦ 연구용역비				50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5,000만원은 연구용역을 위한 것으로 사업부서가 수립한 방침에 따르면 동 연구용역을 통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하여 향후 예술지원 체계 고도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서울시의 관련 기준은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편성전”에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관련 지침에도 학술용역심의 사전검토, 본심의 등을 통과하면 익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사업부서는 사실상 연구용역성 경비를 소요예산에 편성요청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편성요청된

예산액중 연구용역과 관련된 소요예산(5,000만원)은 삭감하고, 이후 사전검토회 및 학술용역심의 등을 이행한 뒤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편성·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수학교(급) 학생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지원 (사업별설명서 p.678)

- 동 사업은 문화적 소외 계층인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억 8,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7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89
사 무 관 리 비				389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버스 임차료 등 운영비				379
◦ 프로그램 컨설팅 및 장애인식교육 등				10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의 「202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대상을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에도, 지난 '22년도에 처음 추진된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특히, ①'23년도에는 사업대상을 특수학교 학생에서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까지 확대하고, ②'25년도에는 일반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에서 정

한 사회보장제도 실체적 내용 변경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복지실 어르신복지과의 경우에는 '24년도부터 추진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지난 '25년 7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여 관련 사전 절차 미이행 여부를 해소하려 한 사례도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문화 분야에서 관련 시설의 이용 지원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의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 영화관람권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이 '22년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개시 이후 관련 절차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기에 사후라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사업의 효용이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운영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위법 소지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80〉 특수학교(급) 학생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지원 추진실적

사 업 연 도	추진실적
2022년도	○ 서울시내 특수학교 25개교 2,130명 관람
2023년도	○ 특수학교 학생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까지 확대 - 특수학교(급) 학생 및 교원 3,050명 관람
2024년도	○ 활동보조사 지원 확대, 전일제 프로그램 확대 - 특수학교(급) 학생 및 교원 5,104명 관람
2025년도	○ 일반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까지 확대 - 특수학교(급) 학생 및 교원 5,759명 관람 ('25.9월말 기준)

※ 자료근거 : ■ 문화본부, 202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617
 ■ 문화본부,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678

11) 관광체육국

□ 고척스카이돔 운영 (사업별설명서 p.178)

- 동 사업은 고척스카이돔 행사운영 및 시설 등을 관리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7억 2,300만원 등이 포함된 117억 9,200 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8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1,792	
사	무	관	리	비	25
◦ 광고권 감정평가 수수료				25	
공	공	운	영	비	41
◦ 재해복구 보험료				41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11,723	
◦ 인건비성 경비				6,228	
◦ 운영비				4,458	
- 일반운영비				1,325	
- 재료비				135	
- 동력비				2,178	
- 연금부담금				632	
- 수선유지교체비 ^{주1)}				91	
- 기타				94	
◦ 운영비				1,037	
공 기 관 등 에 대 한 자 본 적 위 탁 사 업 비				2	
◦ 수탁자산취득				2	

주1) 수선유지교체비는 9,120만원은 ①전산수선 유지비 5,120만원, ②DB 암호화 솔루션도입 4,000만원임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26년도 예산을 통해 고척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 솔루션 프로그램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신규로 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 소모품 구매가 아닌 자본형성적 성격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의 **서울시 누리집 운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의 **성과주의예산운영** 등 서울시의 타 부서의 경우에도 신규 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자본형성적 성격의 예산과목으로 편성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솔루션 도입 관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6년도 예산안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편성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체육정책과)의 편성 오류를 바로 잡지 않은 사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82〉 솔루션 프로그램 관련 예산 편성 사례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사업명	세부내역	통계목	예산액
홍보기획관	서울시 누리집 운영	통합 회원 차세대 통합 인증 솔루션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
기획조정실	성과주의예산운영	재정통합시스템 재구축 솔루션 구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원무전산시스템 고도화	영상의무기록 솔루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원무전산시스템 고도화	전자동의서 솔루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
디지털도시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백업 솔루션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
디지털도시국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차세대 통합공간정보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웹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

- 그럼에도 예산과목을 경정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이행한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고,
- 솔루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편성요청된 타 사업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을 통해 예산이 조정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서 편성요청한 솔루션 관련 소요예산(4,000만원)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 관련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적정규모 등을 도출하고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요청된 동 사업의 솔루션 도입 관련 소요 예산(4,000만원)은 삭감하고 향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경 등을 통해 편성하는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 평생교육국

□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

- 지방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2)
- 담배소비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5)
- 지방교육세 전출 (사업별설명서 p.48)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52)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55)
- 지방이양사무 지원(전환사업) (사업별설명서 p.59)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사업별설명서 p.62)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1)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6)

○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전출금**과 관련 조례 등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을 합하여 총 4조 215억 8,3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임

〈표 2-83〉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명	'26년도 예산안	'25년도 본 예산	'25년도 최종예산	증 감 (최종예산대비)
합	계	4,021,583	3,845,917	4,023,860	△2,276
법정전출금	소 계	4,005,820	3,828,452	4,006,395	△575
	지방세 전출	1,856,198	1,760,384	1,850,540	5,658
	담배소비세 전출	233,127	246,269	249,124	△15,997
	지방교육세 전출	1,902,299	1,817,977	1,902,908	△609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10,373	-	-	10,373
	지방이양사무 지원	43	43	43	-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3,778	3,778	3,778	-
비법정전출금	교육경비보조 (조례상 전출금)	15,762	17,464	17,464	△1,701

□ 법정전출금

- 서울시가 편성한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지방세 전출** 등 6개 사업, 4조 215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지방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세 총액의 1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조 8,505억 4,000만원) 보다 56억 5,800만원 증가한 1조 8,561억 9,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지방세 전출금은 서울시교육청의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10조 9,422억 700만원)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재원을 이전받는 기관이 예측가능한 재정운용을 계획하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전출금이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담배소비세 전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기 위해 전년도 최종예산(2,491억 2,400만원) 보다 △159억 9,700만원 감소한 2,331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별설명서 p.55)

-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보통세의 0.6% 이내)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교육경비 보조금의 10% 이내)을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①초,중·고 입학준비금 153억 1,200만원, ②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 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7억 6,200만원(보통세의 0.07% 수준)을 편성한 것임
 - ②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은 국가, 서울시, 교육청이 재원을 50:25:25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24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었으나, '25년도부터 교육부의 대응투자 요청에 따라 '26년도 예산안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4〉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사업내용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예산(안) ㉠	2025 예산 ㉡	증 감 ㉠-㉡	추진대상
계		15,762	17,464	△1,701	
일반교육경비		15,762	15,876	△114	
	①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15,312	15,501	△189	186,040명
	②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	450	375	50	15개교
특별교육경비		-	1,587	△1,587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89)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초·중·고 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2,256억 4,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금년도 최종예산(2,181억 5,800만원)보다 74억 9,0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학교급식 인원은 금년도 772,392명 보다 △33,080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급식단가가 인상(식품비 5.1%, 관리비 3.6%, 인건비 2.9%)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액 편성 요청된 것으로 검토됨

〈표 2-85〉 2026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명, 원)

학교급별		변 동 내 역 (' 2 5 년 도 → ' 2 6 년 도)								
		25년 예산	26년 예산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계		739,312	772,392	△33,080						
초	공립	308,131	330,623	△22,492	192	192		4,320	4,292	28
	국사립	22,915	22,999	△84	192	192		6,243	6,262	△19
중	공립	150,363	153,880	△3,517	180	180		4,781	4,668	113
	국사립	51,392	52,635	△1,243	180	180		7,518	6,915	603
고	공립	69,183	71,333	△2,150	173	173		4,978	4,875	103
	국사립	132,833	136,384	△3,551	173	173		7,747	7,175	572
특수	공립	1,848	1,856	△8	192	192		5,407	4,890	517
	국사립	2,647	2,682	△35	192	192		7,960	6,860	1,1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292~293

주1) 서울시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단가는 서울시교육청 급식 단가에서 Non-GMO 단가가 제외됨

- Non-GMO 단가 : (초) 55원, (중) 83원, (고, 특) 85원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6)

○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244억 9,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원아 58,594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816억 6,500만원중 기관 부담비율에 따라 서울시 부담분 244억 9,900만원(30%)를 편성한 것임
- 동 소요예산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 238억 7,400만원 보다 6억 2,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급식단가 인상(식품비 5.1%, 관리비 3.6%, 인건비 2.9%)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6〉 2026년도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편성기준

(단위: 명, 원)

학 교 급 별	변 동 내 역 (' 2 5 년 도 → ' 2 6 년 도)								
계	58,594	60,108	△1,514						
공 립	13,592	13,569	23	182	182		4,662	4,476	186
사 립	45,002	46,539	△1,537	217	217		7,184	6,787	397

※ 공립유치원 23명 증가, 급식단가 186원 증가

※ 사립유치원 △1,537명 감소, 급식단가 397원 증가

※ 자료근거 :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평생교육국)」, p.296

13) 시민건강국

□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별설명서 p.403)

-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민간산후조리원을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지정·운영하여 산후조리에 대한 산모의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25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28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7〉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800	
사	무	관	리	비	50
	◦전문가 자문단 및 지원단 운영			50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2,500	
	◦산후조리원 운영보전비 지원 (500백만원×5개소)			2,500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자 체 재 원)				250	
	◦산후조리원 환경개선비 지원 (50백만원×5개소)			250	

- 동 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소요예산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지난 11월14일 ‘조건부 협의완료’를 얻은 것으로 확인됨

〈표 2-88〉 유사사업 비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소 관 부 서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 고
서울형 안심 산 후 조 리 원	시민건강국	2,800	○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모 ○ 사업 내용 - 산후조리원 시설 개선비 및 이용인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시비 100%
첫만남이용권 지	여성가족실	73,789	○ 지원 대상 및 지원금 - 출생신고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사용 범위 - 산후조리원 포함 전 업종 ※ 일부 제외 : 유흥·사행업종 등	국비:시비:구비 (45:27.5:27.5)
서울형 산 후 조 리 경 비 원	여성가족실	24,089	○ 지원 대상 및 지원금 - 출생신고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 ○ 사용 범위 - 산후조리경비(의약품, 건강식품 한약조제, 산후운동 등) ※ 일부 제외 : 산후조리원	시비: 구비 (50:50)

※ 자료근거 :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03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56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80

- 다만, 부수적인 측면에서 여성가족실은 이미 산후조리원 경비로 사용가능한
① 국비 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이 시행 중이고, ②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출산자녀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도 추진하고 있어 중복지원 소지도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사업은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된 조리원 5개소에 5억원씩 운영보전비를 지급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 동 조례는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

도록' 정하고만 있어 민간의 산후조리원까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 예산편성은 불가한 사안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감면료 등을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예산이 편성요청 되는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별설명서 p.379)

- 동 사업은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자 서울여성가족재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1,500만원이 포함된 5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9〉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20
사무관리비				5
◦ 자문회의 및 홍보비 등				5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15
◦ 서울난자동결 비용 지원금				515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서울시가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0세에서 49세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어 지난 '23년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하였으나,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이 다른 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한 이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지속여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바,
 - 서울시는 '25년 9월,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재협의를

완료한 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지난 '24년 1월, 여성가족실에서 시민건강국으로 사업부서가 이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보장기관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출연기관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원할 수는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 관련 지침에도 **보조금이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출예산 과목내역이 없어 출연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시민건강국 소관 저출산 대책인 ① **35세 이상 임신부의료비 지원**과 ②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도 사회보장급여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설정하여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 **디딤돌 소득**의 경우에도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가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하여 직접 지원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의 경우에도 사업추진 주체를 서울시로 변경하고, 적정 예산과목인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별설명서 p.930)

- 동 사업은 서울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52억원(국비 26억원 포함)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90〉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5,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5,200

- 관련 법령 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전재원이 포함된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가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한 이후 투자 심사를 의뢰하되, 소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가)내시한 경우도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 가내시된 국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이 40억원 이상 사업인 동 사업(52억원)의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법정 절차인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 요청하여야 함에도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편성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이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결국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요청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사전통보에도 **자본보조**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요청한 것은 투자심사 대상임을 은닉하려는 의도일 수밖에 없어 적정 예산과목으로 수정하는 것은 물론 사전절차(투자심사) 이행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5년도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한 이후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전용한 바, '25년도에 이어 '26년도 예산까지 동일한 기만적 방법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사의 진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 단순한 실수로 사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법정절차인 투자심사를 선(先) 이행한 이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 요청될 사안으로 판단됨

□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수정 필요**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사업별설명서 p.338)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별설명서 p.376)

○ ①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이행한 사회보장 사업인 바,

- ①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6억 7,900만원이 포함된 316억 8,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고,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조생식술 비용(1회당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00만원(국비3,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의해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는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는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정하면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 ①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이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수정하고,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 편성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국**

고보조재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9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내용

301 일반보전금	<p>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p> <p>1.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또는 물품지원비(국고보조재원+지방재원 모두 포함)</p> <hr/> <p>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p> <p>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지방재원으로만 편성된 사업)</p> <p>※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취약계층 현금성 복지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가 아닌 301-02에 모두 편성하고, 정보관리사업으로 등록·관리</p>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14) 민생노동국

□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사업별설명서 p.157)

- 동 사업은 AI를 활용한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위기상권을 예측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상권분석서비스를 운영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고도화 관련 소요예산(4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억 2,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121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1,121
◦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670
◦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429
◦ 위탁 수수료				21

- 관련 규칙 등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동 사업과 관련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3〉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요청	증 감 액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26년도 편성액
499	△70	429	384

- 다만, 시스템 고도화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 소모품 구매가 아닌 자본형성적 성격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여성가족실의 **불법 성산업 감시**, 경제실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등 서울시의 타 부서의 경우에도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자본형성적 성격의 예산과목으로 편성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동 세부사업에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중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4억 2,9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94〉 시스템 고도화 관련 예산 편성 사례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사업명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여성가족실	불법 성산업 감시	온라인 광고 차단 시스템 고도화	민간위탁사업비	50
경제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기술교육원 통합 홈페이지 고도화	민간위탁사업비	100
복지실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복지포털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442
기후환경본부	은행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	은행제한 단속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417
"	환경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환경분쟁조정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183
시민건강국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시스템 구축 운영	서울형 헬스케어플랫폼 고도화 (기능추가)	전산개발비	917
디지털도시국	엠보팅 서비스 운영	엠보팅 서비스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220
"	서울온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서울온 서비스 고도화	전산개발비	201
"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고도화	전산개발비	116
"	서울시 CCTV 안전센터 운영	자치구 생성형 AI기반 지능형 CCTV 고도화	전산개발비	378
"	서울시 CCTV 안전센터 운영	서울시 CCTV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
미래공간기획관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공공건축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300
재난안전실	도로시설물 스마트유지관리 플랫폼운영 및 고도화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용역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
도시공간본부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175
"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심의지원시스템 운영	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160
"	지적측량 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지적측량 포털 시스템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229
정원도시국	사면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고도화를 위한 구축용역 (2년차)	전산개발비	384
"	서울대공원 정보통신 사업	CCTV 시스템 고도화	시설비	86

15) 미래공간기획관

□ 편 스테이션 운영·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71)

- 동 사업은 러너지원공간을 운영하고, 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보수 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사업비 4억 7,500만원을 포함한 11억 5,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	산	안
계						1,154
사 무 관 리 비						650
○ 운영비						242
- 러너지원공간 운영비						242
○ 임대료						346
- 먹골역						18
- 러너지원공간						28
- 편스테이션						300
○ 관련경비						32
- 공간사용료						29
- 제안서평가 및 자문회의비						3
○ 모니터링 용역						30
- 편 스테이션 및 러너지원공간						30
공 공 운 영 비						29
○ 하자보수비						21
- 기초성 역사 하자보수비						21
○ 일반관리비						8
민 간 위 탁 사 업 비						475
○ 민간위탁비						475

- 민간위탁사업비 4억 7,500만원을 편성요청한 문정스포츠 가든 광장의 신규 민간위탁의 경우, 체육시설과 정원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광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2-96〉 문정역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시설 운영 및 녹지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형 정원 가꾸기, 원예체험 등 정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 환경 조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및 사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허가, 민원 처리, 이용료 징수 등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활력담당관-7320 ('25. 9. 2), “문정역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추진계획(신규)” 재구성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사업비를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시킬 경우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정스포츠 가든 광장의 신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과 관련 있는 사무임에도 자본형성적 위탁 경비로 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 요청하고 있어 적정 예산과목인 민간위탁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10월18일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가 지난 11월25일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16) 디자인정책관

□ 사전 절차(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사업

- 빗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별설명서 p.172)
- 독섬한강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별설명서 p.182)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은 전기 분야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업중 **빗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독섬한강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예산안의 산출근거에 포함된 용역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대상에 해당됨에도 예산안 제출일('25.10.31)까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9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미이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용	예산안 ('25.10.31)	심사요청일	심사여부 ('25.11.24 현재)
빗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빗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 조사	180	'25.10.29	'25.11. 3
독섬한강공원 경관조명 설치	청담대교 진입램프 경관조명 설치	1,300	미실시	미실시

○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이행여부에 대해 '26년도 예산안 제출('25.10.31)이후 '25년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사업부서는 예산안 제출 직전이나 제출된 다음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 제출전에는 용역사업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확인 과정이 진행되자 예산안 제출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야 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됨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확인과정이 사전절차(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었으나, 이는 시의회의 업무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안 편성과정의 필수사무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7) 재난안전실

□ 긴급 도로개선 (사업별설명서 p.235)

- 동 사업은 서울시 간선도로 상의 상습 정체구간을 발굴하여 교통체증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31억 3,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9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131	
시	설			비	3,131
	◦ 도로개선 공사비			2,68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50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중 도로개선 공사비(26억 8,100만원)를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에 따라 소요될 수 있는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요청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5년도의 경우에도 도로개선 공사비에 대한 소요예산(16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지난 11월중 시설비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한 바 있어 소요예산중 감리비가 편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난 '22년도부터 시행중인 관련 법령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법령 등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감리라고 정하고 있는 바, 기존 도로개선 공사비 등을 위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별도로 감리 업무에 소요될 감리비를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99〉 긴급 도로개선 소요예산 편성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주1)}
계	3,131	2,100
시 설 비	◦ 도로개선 공사비 2,681	◦ 도로개선 공사비 1,6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

※ 주1) '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25년도 본예산(31억원)보다 △10억원 감액된 것임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향후 사업추진중에 감리 등에 대한 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심의·의결된 시설비를 변경하여 감리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일 수 있으나,
- 예산의 변경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회계연도중 소요될 가능성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시설비와 구분하여 편성요청하지 않은 것은 변경사용이 전제된 편의적 편성 사례일 수 밖에 없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GPR 등을 통한 지반침하 예방 (사업별설명서 p.480)

- 동 사업은 서울시 보도·차도와 굴착공사장 주변 등에 대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자 시도 공동조사용역을 위한 시설비 33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117억 7,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1,776	
사	무	관	리	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평가 및 자문 회의수당 ◦ 공동조사 관련 안전용품구입 			4 2	
연	구	용	역	비	120
	◦ 공동탐지 시모델 및 현장 공동 분석시스템 개발 서울시 분담금(2차년도)			120	
시	설			비	11,649
	◦ 시도 공동조사용역 (시도 2,200km×1,509,000원)			3,319	
	◦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긴급조사 500km×1,097천원)+ (핸드형 GPR 420개×49천원) + (천공 및 영상촬영 350개×1,000천원) + (신속복구 245개×330,285원)			1,000	
	◦ 공동 굴착복구비			784	
	◦ 대형 굴착공사장 공동조사 지원 (대형굴착공사장 4,223km×1,550,000원)			6,545	

- '25년 8월, 사업부서는 시도 공동조사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 '25년 8월, 사업부서의 요구액(33억 1,980만원)보다 △88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으나, 제출된 예산안에 관련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당초 사업부서의 요구액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서 조정된 예산(△880만원)의 규모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에 해당하나, 「202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소

액이라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삭감된 금액만큼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01〉 GPR 등을 통한 지반침하 예방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 계 획	추진세부내용
계		11,776	
사무관리비	2026.1.~2026.12	6	공동조사 관련 회의 및 안전용품 구입
시도 공동조사용역	2026.1.~2026.12	3,319	공동조사 2,200km(5개권역 중 4권역, 법정업무)
도로공동확인조사	2026.1.~2026.12	1,000	자체조사 10,000km에 대한 공동확인 및 신속복구
공동굴착복구	2026.1.~2026.12	784	공동 굴착 원인조사 및 굴착복구 (사업소 재배정)
대형 굴착공사장 공동조사 지원	2026.1.~2027.4	6,545	지하철 등 대형굴착공사장 상시점검 지원 (사업부서 재배정)
공동탐지 시모델 및 현장 공동 분석시스템 개발 참여	2026.1.~2026.12	120	행안부-서울시 8:2 매칭사업. 2차년도 분담금

※ 자료근거 : 재난안전실,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483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 위탁** (사업별설명서 p.587)

- 동 사업은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서울시설공단
에 위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5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574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5,574
◦ 위탁사업비				5,352
- 인건비				3,060
- 수선유지비				805
- 수탁자산취득비 (차량 구매비용 2대 8,600만원)				137
- 일반운영비 등 경비				1,348
◦ 간접관리비(본부 간접비)				221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자치단체
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할 경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 편성요청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1억 3,700만원)중 차량 구매비용(8,600만원)을 포함한 1억 3,700만원을 수탁자산취득비로 편성요청한 바,
- 동 사업내용은 자본형성적 경비로 사료됨에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 예산과목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8) 주택실

□ 합리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73)

- 동 사업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3〉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75
사무관리비				175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				151
- 학술연구용역				150
- 제안서평가수당				1
○ 자치구, 국토부 실무협력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24
- 인쇄비 등				4
- 전문가 자문료				8
- 자치구 실무교육 등				12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용역의 범위는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로 제한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가능한 용역을 컨설팅, 단순한 조사·통계, 자료수집으로 열거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9월, 학술용역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연구용

역을 위한 예산은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의 경우, 학술용역 사전심의를 이행한 학술연구용역 예산까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훈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정예산 과목인 **연구용역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9) 도시공간본부

□ 적정 예산과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 ①미래서울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99)
 -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운영 (사업별설명서 p.177)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소모적 행정사무비용인 기본경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도 청소, 검침, 경비용역 등에 지출하는 용도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24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용역계약을 통해 일반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키는 일반용역비가 신설되어 사업부서가 예산편성의 편의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해당 용역비는 ①사업부서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채용 및 영상자료 제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반용역비와 ②청사 시설관리·장비 유지관리·전산운영 등 관리용역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인 부서 유지·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미래서울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는 미래서울도시관이 '26년 1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는 것이나,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 10억 4,500만원 전액을 용역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표 2-104〉 소요예산안 중 사무관리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085
	사무관리비			1,045
	○ 인건비			280
	- 급여		236	
	- 퇴직금		20	
	- 보험료		24	
	○ 운영비			335
	- 수선유지비		335	
	○ 사업비			245
	- 전시기획		116	
	- 교육체험		102	
	- 홍보 및 마케팅		27	
	○ 기타			185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185	

- 더욱이 용역으로 추진하려는 과업내용도 도시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AI 키오스크 업데이트 등 경상적인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미래서울관·세계도시관 전시 및 아카데미 기획,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운영 등 미래서울도시관에서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일체를 사인에게 용역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 세부사업 중 단순 지원사무가 아닌 사업의 핵심 과업 전체를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부서 스스로 공공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사무관리비**(10억 4,500만원) 100%를 용역으로 지출하고자 계획한 것은 물론 사업내용 또한 사실상 위탁이나 대행에 근접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에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가 적정한 예산과목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운영**은 토지수용 재결 업무의 공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결 관련 전문검증단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 **사무관리비**로 편성요청한 **사례중심 서울형 재결 기준(안) 마련**은 토지나 소상공인의 영업권 등 재결 관련 사례 분석 및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소요예산 1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10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79
	사무관리비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결서 인쇄비 등 1,000,000원×12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경비 200,000원×12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전검토 및 참석수당 300,000원×8명×12회 ◦ 자치구 등 보상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10,000,000원 ◦ 재결 관련 전문검증단 사전검토 및 참석수당 300,000원×5명×6회 ◦ 재결 관련 전문검증단 운영경비 100,000원×6회 		12 2 28 10 9 0.6
		◦ 사례 중심 서울형 재결 기준(안) 마련 100,000,000원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지적위원회 사전검토 및 참석수당 220,000원×8명×3회 ◦ 지방지적위원회 운영경비 100,000원×3회 ◦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전검토 및 참석수당 220,000원×8명×2회 ◦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경비 100,000원×2회 		5 0.3 3 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 그러나 사무관리비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례 중심 서울형 재결(손실보상) 기준(안) 수립’ 용역은 조사·연구는 물론 판단기준과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학술용역으로 사료되는 바,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조사·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는 **연구용역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편성 요청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보다는 적정 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는 학술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편성전”에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한 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은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적정 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로 수정하려고 하여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이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동 예산은 삭감하고, 향후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 균형발전본부

□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조성 추진

(사업별설명서 p.121)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의 관련 계획에 따른 것으로

- '26년도 상반기중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탈락자에게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202억 1,500만원이 포함된 203억 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기획재정부의 관련 계획에 탈락자 즉, 차순위협상 대상자의 제안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기본보상금, ②가산보상금, ③물가상승률 반영분을 포함하여 기타보상금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보상금”은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포상 및 시상 성격의 세출과목이라는 점에서 동 편성 사례와 같이 차순위협상 대상자의 제안비용을 보상하는 용도로는 기타보상금이 적절하지 못한 예산과목으로 판단됨

〈표 2-106〉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기타보상금)

300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 보상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02.

- 따라서 동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관련 계획에 근거하고 있어 차순위협상 대상자의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은 ‘포상 및 시상’ 성격의 세출과목인 기타보상금 보다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07〉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05.

21) 정원도시국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업별설명서 p.94)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설비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0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00
시	설	비		300
	◦	직접인건비		107
	◦	제경비 (직접인건비 110%)		118
	◦	기술료		45
	◦	인쇄비		2
	◦	부가세		27

- 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과 「예산편성 잠정기준」 에 따르면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부서는 금년도 예산안이 제출(10월 31일)된 이후인 11월 3일에 해당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심의를 신청하였고, 11월 7일에 “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시설비 3억원의 경우, 착수일로부터 18개월 간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용역비(3억원) 전액을 편성요청 하고 있어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사료되어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편성요청된 예산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10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2026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 계	추진세부내용
계		300	
사업계획 수립	2026.01~2026.01	-	'3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계약심사	2026.02~2026.03	-	계약심사
계약 체결 및 착수	2026.04~2027.10	300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 자료근거 : 정월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96

○ 예산의 이월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에도,

- 동 사업은 이미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하고 실제 회계연도중 집행하지 못할 경비까지 편성요청 하고 있어 유사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훈련원공원 리모델링(재조성) 사업** (사업별설명서 p.240)

- 동 사업은 중구 훈련원공원을 디자인 중심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0
시	설	비		50
	◦ 훈련원공원 기본계획용역			50

- 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과 「예산편성 잠정기준」 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는 조경분야의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조경분야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여 용역시행의 타당성, 비용산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은 삭감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11〉 수직정원 조성 2026년도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	
계획 수립	2026.01~2026.01	-	사업계획 수립 및 현장 조사 등
정원 조성	2026.02~2026.06	300	설계 및 시공

※ 자료근거 : 정원도시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269

□ **사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별설명서 p.624)

- 동 사업은 노후화된 사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년도에는 ①시스템 구축 용역비(2년차) 3억 8,400만원과 ② 최신 상용SW 적용 1억 6,600만원이 포함된 전산개발비 5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50	
전	산	개	발	비	550
①기능 고도화를 위한 구축 용역(2년차)				384	
②최신 상용SW 적용				166	

- 관련 규칙 등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고 심사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4년 10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25년도 예산을 통해 1년차 사업비(3억 8,400만원)를 기 편성하였고, 금번 예산안을 통해 ①시스템 구축 용역비(2년차) 3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13〉 사면관리시스템 고도화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요청	증 감 액	정 보 화 사 업 예 산 타 당 성 심 사 결 과	' 2 5 년 도 편 성 액	' 2 6 년 도 편 성 액
1,026	△257	769	384	384

- 아울러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전산개발비중 ②최신 상용SW 적용(1억 6,600만원)의 경우, 지난 '24년 10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총사업비(7억 6,900만원)의 21.5%에 해당되는 바,
 - 예산타당성 심사 당시 대비 7% 이상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규칙은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동 사업내용의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다시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단순히 “최신 상용SW 적용”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적용”의 의미가 ①시스템 구축 용역에 따른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것인지, 이와는 별개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사업내용에 맞는 적정예산과목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만일, 동 사업내용이 별개의 범용SW 등의 구매 등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사무관리비로 구입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인 바, 다음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준에 따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의회의 심사가 한정된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별설명서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련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2) 물순환안전국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후 감액조정된 예산을 미반영한 사업

- 남산 권역 친수 문화공간 조성 (사업별설명서 p.50)
 - 토양오염 실태조사 (사업별설명서 p.88)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에 따르면 사업별로 발주부서 자체심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①남산 권역 친수 문화공간 조성의 경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남산 권역을 중심으로 수변과 도심이 연결되는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4〉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350
시	설		비	350
	◦ 기본구상 용역 시행			350

- 동 사업은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도시계획 분야에 해당되는 바, 지난 10월 28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당초 사업부서가 요청한 3억 5,000만원보다 △8,300만원 감액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②토양오염 실태조사의 경우,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보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시료채취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3,900만원을 포함하여 5,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5〉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5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
재료비				5
◦ 시료분석재료구매				5
시설비				39
◦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				39

- 동 사업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 분야에 해당되기에 지난 10월 25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당초 사업부서가 요청한 3,900만원보다 △94만원 감액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①남산 권역 친수 문화공간 조성과 ②토양오염 실태조사의 경우,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은 당초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당시와 동일한 규모로 사료되어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로 조정한 예산 규모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에 해당하나 「2026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소액이라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정화용역 (사업별설명서 p.102)

-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정화용역의 경우, 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용역 및 오염지하수 정화작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2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9,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94						
사	무	관	리	비	0					
				◦ 전문가 자문회의	0					
공	공	운	영	비	0					
				◦ 양수처리전기료	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시	설							비	287	
									◦ 사평역 주변 오염지하수 확산방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	224
									◦ 사평역 주변 오염지하수 정화	63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에 따르면 기계, 전기, 조경 등 기타 분야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업부서는 지난 10월 17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 10월 24일, 사업부서의 요구액(2억 1,200만원)보다 △12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심사결과가 통보되었으나, 제출된 예산안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편성 사례로 사료됨

- 더욱이 동 편성사례의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와는 다르게 오히려

심사요청 금액(2억 1,2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2억 2,400만원
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집행
기관 스스로 무력하게 하는 사례로 기술용역 심사결과보다 증액하여 편성
요청된 사유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3) 미래한강본부

□ 한강공원 전망카페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36)

- 동 사업은 한강 전망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20				
사	무	관	리	비	107			
◦ 사용료 감정평가비용 및 물품구매				14				
◦ 잠실대교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용역(인건비)				58				
◦ 잠실대교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용역(운영비)				10				
◦ 잠실대교 전망쉼터 비치용 도서 구매				22				
공	공	운	영	비	106			
◦ 공공요금 등(전기, 통신, 수도광열비 등)				12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외관 청소				94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7
◦ 사무용 가구 및 집기 등 구매				7				

-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편성요청된 사무관리비에는 잠실대교 전망쉼터에 비치하기 위한 도서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 2,28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는 예산과목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2,28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도서구입비로 예산과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사업별설명서 p.177)

- 동 사업은 (가칭) 한강 플레이 플레이스와 서울형 키즈카페 뚝섬 자벌레점을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4억 9,600만원을 포함한 19억 2,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8〉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927
사 무 관 리 비				56
◦ 소모품 구매(사무용품, 행사용품) 등				8
◦ 수수료 지급 등				25
◦ 홍보비				21
공 공 운 영 비				975
◦ 공공요금				194
◦ 시설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90
◦ 시설물, 공간, 안전관리 용역				670
◦ 건물 외벽 청소				17
◦ 운영비				2
행 사 운 영 비				400
◦ 문화사업 운영				400
민 간 위 탁 금				496
◦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운영				496
- 인건비				406
- 운영비				80
- 사업비				10

- 동 사업 대상지인 뚝섬 자벌레는 당초 서울생각마루로 운영되었던 장소로 '25년 현재 1, 3층은 한강이야기 전시관으로, 2층은 서울형 키즈카페로 운영되고 있음

○ 동 시설에 포함된 키즈카페는 지난 '22년, 최초 방침수립시에는 미래한강본부에서 조성하고, 여성가족실(舊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5년 현재까지 미래한강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의 관련 법령상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나, 관련 절차 이행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23년 당시 키즈카페 주관부서로부터 해당시설을 미래한강본부에서 운영하도록 전달 받은 바,

- 사업부서는 해당시설의 용도를 노유자시설이 아닌 놀이공간(근린생활시설)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엄마아빠VIP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25년 현재까지 미래한강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동 시설이 지난 '24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고, 관련 규칙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으로 분장한다고 정하고 있어 동 사무는 미래한강본부가 아닌 여성가족실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행정안전부의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는 세부사업은 분야·부문에 맞게 설정·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특성자별레 운영 및 관리**의 분야를 “공원·환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분야에 대해 “사회복지”로 여성가족실은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 세부사업중 키즈카페 운영과 관련된 소요예산(4억 9,6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른 세부사업 분류가 가능하도록 업무 이관 등을 통해 경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강 야생벌 살리기** (사업별설명서 p.352)

- 동 사업은 한강 내 밀원숲 조성 등 야생벌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19〉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00
시	설		비	10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00

- 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기준」 과 「예산편성 잠정기준」 에 따르면 기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부서는 동 세부사업의 기술용역의 소요예산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심사결과 용역비를 △108만원 감액하도록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타당성심사 결과 발생된 감액규모(△108만원)는 비록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소액에 해당되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전 절차가 이행되고 심사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4) 서울역사박물관

□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p.114)

- 동 사업은 시(市) 지정 민속문화유산 제22호 백인제가옥 및 국가 사적 제 465호 서울 경고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6억 7,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0〉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67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39
◦ 촉탁직 10명 보수				439
사무관리비				115
◦ 백인제가옥 운영				65
◦ 경고장 운영				50
공공운영비				111
◦ 시설물 유지관리				10
◦ 공공요금				53
◦ 무인경비용역시스템 운영				22
◦ 전시 유물보험료, 영조물배상회비, 공유재산 손해보험				5
◦ 백인제가옥 공공예식장 환경 조성				21
- 안내 표지판 교체				3
- 공공예식장 시설 유지 관리				18
기타보상금				4 4
◦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4

○ 서울시는 지난 '24년도부터 공공예식장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사업부서(도시유적전시과)는 지난 '25년 6월, 백인제가옥이 공공예식장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백인제가옥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관련 조례는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백인제가옥은 시지정유산에 해당됨으로 해당 문화유산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는 동 조례 제33조③항4호를 근거로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난 '25년 6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건축분과)는 백인제가옥에 CCTV를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까지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지정 문화유산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주요한 사안을 결정할 시에는 조례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편성요청된 공공예식장 조성과 관련된 소요예산 2,14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경 등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난 '24년 5월 17일,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財)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조차도 “문화재(財)”와 “문화유산”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향후에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하게 사업별설명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임

25) 자치경찰위원회

□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 (사업별설명서 p.165)

- 동 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치안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2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1〉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81
사 무 관 리 비				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 순찰대 모집 및 선발 ◦ 반려견 순찰대 활동 운영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수당 및 운영 ◦ 시민참여단 운영 ◦ 러닝 순찰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닝 순찰대 활동용품 - 앱 서비스 및 러닝순찰 대시민 이벤트 - 경찰서 현장교육 및 합동순찰 - 우수활동 순찰대·대원 시상 5개×200,000원×2회+10명×100,000원×2회 - 러닝 순찰대 모집 선발 ◦ 스마트 과학치안 정책자문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6 123 1 0 71 32 23 10 4 2 8
행 사 운 영 비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순찰대 성과보고회 				35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업무추진비 				5

- 관련 방침 및 사업별설명서에 따르면 ①러닝 순찰대 활동용품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중 3,200만원을 편성하고, ②우수 활동 순찰대 및 대원에게 시상(지역사랑상품권)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중 400만원을 각각 편성한 것으

로 확인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에 한정하여 편성·지출되는 행정사무 목적의 물건비로써 민간인에게 활동용품이나 시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편성 사례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또는 포상에 따른 시상금 품’으로 정하고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하여 편성·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편성요청된 세출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할 경우, 민간인에게 “활동용품 및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 동 사업중 “활동용품 및 시상금”의 사업추진근거를 관련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인에게 “활동용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부서가 지난 10월20일, 관련된 전 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것으로 확인됨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별설명서 p.172)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은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장비 지원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8,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2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88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88
○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88
- 범죄예방 캠페인 및 교육 등				48
- 청소년 대원 합동 방범순찰				18
- 자율방범대 정복 지원				21

- 행정안전부가 지난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부터 관련 법령과 동법 시행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를 편성할 경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설정하도록 내용을 정비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지난 '25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안을 통해 편성요청된 동 사업의 경우 관례답습적으로 산출근거를 재활용하여 오편성하고 있는 바,
 - 편성요청된 사업내용중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율방범대 정복 지원**과 관련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 대원 합동 방범순찰, 범죄예방 캠페인 및 교육** 등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예산과목을 수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심사시 의회로 부터 지적된 사안은 편성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가 확인하고 적정과목으로 편성하여 제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 부적정 편성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집행기관이 절차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내용의 필요와 취지를 감안하는 것과 별개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검토의견

□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사업비로 오·남용 편성한 사례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사무관 리비**를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사무비용인 **기본경비**에 포함시키고 있음

〈표 2-123〉 기본경비의 범위 예시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소모성물품구입비 :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급식비 • 일반수수료 :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사업소, 읍·면·동) • 일·숙직비(사업소, 읍·면·동) •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 범용S/W구입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202 여비	국내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월액여비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물품취득비 • PC,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냉온수기 등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정원가 산업 무 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 **사무관리비**가 포함되는 **기본경비**는 사업부서의 운영을 위해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경상적, 소모적 경비임에도 행정편의나 사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부서가 사무관리비를 오·남용 편성하는 사례가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무관리비로 용역계약을 통해 일반업무를 외부에 대행시키는 일반용역비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부서가 사무관리비를 편의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관련 법령중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일반용역으로 가능한 소규모 용역을 청소, 검침, 경비용역 등에 지출하는 용도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을 통해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①일반용역비와 ②관리용역비를 보완한 바 있어 사업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하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부서의 유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라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은 부서 운영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①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에 한정되는 **소규모 용역**이나, ②영상자료 제작 등 사업부서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워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용역비**, ③청사의 시설관리,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을 외부에 대행시키는 **관리용역비**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24〉 사무관리비중 일반용역비와 관리용역비 분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p>7. 일반용역비 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중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p> <p>8. 관리용역비 가.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201-02,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고, 시설장비 일체에 대해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은 사무관리비(201-01, 관리용역비)로 편성 ※ 예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계약 비용</p>

※ 자료근거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5. 7), p.91

○ 그러나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청년 인생설계 학교**의 경우에도 용역을 통해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운영(11억 6,700만원)함에 있어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11억 7,000만원)의 99.7%를 용역으로 지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내용 또한 사실상 위탁이나 대행에 근접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한 사무관리비가 적정한 예산과목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도약팀** 소관 **서울영커리언스**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단계 커리어 코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4단계 코스는 사무관리비로 추진하고, 5단계 코스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나,

- 사무관리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하고, 사무관리비로 추진하는 2~4단계 코스의 경우에는

부서의 유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 편성 요청한 소요예산의 예산과목이 적정한 것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2-125〉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무관리비 부적절 편성 사례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사 무 관 리 비 편성요청액(안)	사 업 내 용
청 년 인 생 설 계 학 교	1,170,500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1,167,300천원
서 울 영 커 리 언 스	1,600,000	• 서울영커리언스 캠프 400,000천원 • 서울영커리언스 챌린지 300,000천원 • 서울영커리언스 점프업 900,000천원

○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은 관련 조사에 사무관리비 1억 1,100만원을 집행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산업경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무관리비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대한 기능별 구분은 “기타”에 해당되며, 성질별로는 “물건비(일반운영비)”에 해당되어 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고려할 때 편성 요청된 예산과목과 상호 불일치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세부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와 편성되는 예산과목이 유사성을 갖도록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어 물건비 즉, 사무비용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단순 조사나 컨설팅으로 사료되어 사무관리비로 편

성하여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관련 조사나 컨설팅이 사실상 사업의 전 부임에도 공공의 역할 전부를 용역계약을 통해 민간에게 수행하도록 한다면 공공의 필요성을 축소 시킬 수도 있어 향후 유사 편성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26〉 디자인정책관 소관 사무관리비 부적절 편성 사례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사 무 관 리 비 편성요청액(안)	사 업 내 용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11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평가 참석수당 실태조사 	<p>1,600천원</p> <p>110,000천원</p>

○ **주택실** 부동산제도팀 소관 **합리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임

-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용에 해당하고, '24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일반업무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일반용역비를 신설한 바 있어 사업부서가 편성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지난 9월, 관련 조례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학술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법령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는 청소, 검침, 경비용역 등에 지출하는 용도로 명시하고 있어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적정 예산과목인 **연구용역비**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27〉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175
사무관 리 비				175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선방안 학술연구용역 - 학술연구용역 150,000,000원 - 제안서평가수당 200,000원×8명 = 1,600천원				151,600천원
○ 자치구, 국토부 실무협력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 인쇄비 등 200,000원×20회 = 4,0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200,000원×8명×5회 = 8,000천원 - 자치구 실무교육 등 4,000,000원×3회 = 12,000천원				24,000천원

- 건축주택정보팀 소관 전자결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연구는 해당 세부사업의 소요예산을 사무관리비 1억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이 ‘개선되고 추가적으로 제공될 서비스를 찾기 위한 것’이기에 학술용역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일 수 있으나, 일반용역은 컨설팅, 단순 조사·통계, 자료수집으로 한정되고 있고, 사업내용이 사실상 기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향상,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이나 시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과 유사범주에 속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28〉 주택실 소관 사무관리비 부적절 편성 사례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사	무	관	리	비	사	업	내	용
				편성요청액(안)								
전자결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100,000				전자결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안 연구				

- 더욱이 주택실 소관 세부사업중 K-건축문화 글로벌 확산과 제4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경우에도 발주를 통해 전문기관에 수탁하는 용역으로써 소요예산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역의 결과가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과 유사한 사업내용은 예산과목을 공통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29〉 학술용역과 일반용역 비교

	학 술 용 역	일 반 용 역
정 의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 상	사업계획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시정정책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소프트웨어 분야, 보험, 행사대행용역, 교육, 의료서비스, 건설폐기물 등
사 전 절 차	학술용역심의회	없음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지방계약 실무 안내서」, p.12

- 세부사업을 편성·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사무관리비 지출방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편성전 이행하여야 하는 사전절차도 없어 사업비 성격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편성·지출하는 사례가 있는 바,
 - 용역은 단순 지원 사무에 대해 민간 부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이며 일부 사무만을 민간에게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나,

- 소요 예산액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일체를 사
인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면 결국 사업부서 스스로가 공공
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례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사무관리비의 기본적인 성질은 행정비용이나 물건비(운영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업비와 사무비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적용하여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가 사업비성 경비로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출자출연동의)가 필요한 사업

○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출자금을 편성요청한 15개 세부사업은 예산안 제출('25.10.31)에 앞서 시의회로부터 출자금 편성을 위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나,

〈표 2-130A〉 출자 동의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출자금	의안명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기후환경본부, p.186)	6,00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3062)	환경 수자원	'25. 8.11	가결 '25. 9. 5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주택실, p.121)	136,34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3071)	주택공간	'25. 8.11	가결 '25. 9.12
청년 매입임대 (주택실, p.131)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실, p.140)					
자율주택 등 매입임대 (주택실, p.181)					
공공주택 건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실, p.247)					

〈표 2-130B〉 출자 동의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출자금	의안명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서울리츠3호 출자금 (주택실, p.149)	12,140	서울특별시 서울리츠3호 (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3072)	주택공간	'25. 8.11	가결 '25. 9.12
4호선 운영필수시설 현업사무실 설치 (교통실, p.95)	109,249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3075)	교통	'25. 8.11	가결 '25. 9.12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교통실, p.109)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교통실, p.114)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교통실, p.118)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교통실, p.123)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교통실, p.128)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교통실, p.152)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교통실, p.156)					

- 출연금을 편성요청한 23개 세부사업 중 재무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을 포함한 5개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일('25.10.31)까지 시의회로부터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출연금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31〉 출연 동의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출연금	의안명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재무국, p.83)	2,09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046)	행정자치	'25. 8.11	심사보류 '25.11.28
서울장학사업 추진 (평생교육국, p.36)	18,916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047)	“	'25. 8.11	원안가결 '25.11.27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평생교육국, p.98)	14,56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048)	“	'25. 8.11	원안가결 '25.11.27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평생교육국, p.136)	31,28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049)	“	'25. 8.11	원안가결 '25.11.27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민생노동국, p.39)	28,710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059)	기획경제	'25. 8.11	수정가결 '25.12. 1

- 아울러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제도는 출자·출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출자·출연금 편성 전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바, 관련 부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전절차가 이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절차(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업

- 관련 법령은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에도 ①신규 위탁사무, ②재위탁사무, ③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④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고 다시(제3자 재위탁) 위탁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음
 - '26년도 예산안에는 20개 실·본부·국, 200개 세부사업에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행정국 소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을 포함한 12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1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안 제출일('25.10.31)까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을 포함한 9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33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관련 세부사업에 편성요청된 민간위탁금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32〉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민간위탁금	의안명	제출일	심사일	의결 결과
행정국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 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p.347)	1,391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35)	10.18	11.26	원안가결 (11.26)
민생노동국	풍물시장 관리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p.184)	433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36)	10.18	11.28	원안가결 (12. 1)
기후환경 본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사업별설명서 p.401)	28,589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37)	10.18	11.24	원안가결
〃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사업별설명서 p.401)	15,579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38)	10.18	11.24	원안가결
복지실	어르신의료복지 시설 운영(요양) (사업별설명서 p.985)	423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59)	3.31	-	원안가결 (11.26)
〃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운영 (사업별설명서 p.240)	1,108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94)	8.11	-	원안가결 (11.26)
〃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370)	3,198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39)	10.18	11.26	원안가결 (11.26)
여성가족실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자체) (사업별설명서 p.460)	911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10.18	11.24	원안가결 (11.24)
〃	시립 서울형 키즈 카페 운영 (사업별설명서 p.423)	301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40)	10.18	11.24	원안가결 (11.24)
〃	시립 서울형 키즈 카페 운영 (사업별설명서 p.423)	211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 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41)	10.18	11.24	원안가결 (11.24)
〃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별설명서 p.423)	180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 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42)	10.18	11.24	원안가결 (11.24)
미래공간 기획관	편 스테이션 운영·유지 관리 및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71)	475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43)	10.18	11.25	원안가결 (11.25)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아울러 관련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 바,

-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을 요청하는 안건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26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①복지실 소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인 **장애인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금 31억 9,800만원)과 ②여성가족실 소관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마포점, 민간위탁금 9억 1,100만원),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운영**(노고산점, 민간위탁금 3억 100만원)
 - 그리고 ③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목동야구장점, 민간위탁금 2억 1,100만원)과 ④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길동생태공원점,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
 - ⑤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인 **편 스테이션 운영·유지 관리 및 활성화**(민간위탁금 4억 7,500만원) 등 5건의 경우,
 - 신규 민간위탁 동의건에 해당되어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이후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는 바, 향후 유사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성가족실 소관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부사업이 ①**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과 ②**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노고산점 운영**이라는 개별 위탁사무임에도 단일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나,

-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시 ‘가부’만을 결정하는 안건으로 성격이 상이한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동의안으로 포괄하여 제출할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찬·반을 표시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기관의 편의가 우선되어 단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사업별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로 개선이 요구됨

□ 사전절차(조례 제·개정)가 필요한 사업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에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포함한 6개 세부사업은 예산안 제출('25.10.31)까지 시의회로부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관련 근거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을 포함한 5개 세부사업별로 개별 조례 제·개정안이 금번 제33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관련 세부사업에 편성요청된 세출예산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시공간본부 소관 **도심복합개발 민관협력 실행방안 마련**의 경우,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하여 ①통합심의위원회, ②공모운영위원회, ③평가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나,
 - 위원회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가 지난 10월,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으나, 지난 11월 24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18일 상정예정으로 확인되는 바,

-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중 수당성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의 편성 여부가 결정되어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33〉 세부사업 관련 조례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2026 예산안	의안명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자치경찰위원회, p.159)	13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 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3291)	행정자치	'25.10.20	원안가결 '25.11.25
전문가 중심의 규제 개선 심사 및 분석 (기획조정실, p.291)	92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번호 3323)	기획경제	'25.10.18	수정가결 '25.11.25
보훈대상자 등 지원 (복지실, p.57)	104,660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31)	보건복지	'25.10.20	원안가결 '25.11.26
통합돌봄지원사업 추진 (복지실, p.977)	6,435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3327)	''	'25.10.18	수정가결 '25.11.26
도심복합개발 민관 협력 실행방안 마련 (도시공간본부, p.50)	424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3329)	도시계획 균형	'25.10.18	'25.12.18

- 여성가족실 소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70~100만원의 교통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를 지원하려는 것이나 동 사업의 근거 조례에는 임산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통비를 70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요예산 편성에 앞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수정하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예산안 제출일('25.10.31)까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34〉 세부사업 관련 조례안 처리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실·본부·국)	2026 예산안	관련 의안명	관련 위원회	제출일	의안처리 결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실, p.60)	36,83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	-	-

□ 사업별설명서 작성 개선 관련

- 관련 법령에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예산안 제출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명시하고 있음
 - 예산안과 예산안 첨부서류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수입과목·지출과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계목 하위에 산출근거(부기)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출된 '26년도 예산안과 첨부서류인 사업별설명서 중 세출예산에 세입과목인 임대 수입(임대료)을 세출과목인 임차료와 여전히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세출예산중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부기)에 수입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기재한 사업들이 '24년도, '25년도에 이어 '26년도에도 다수 확인되는 바, 지출에 해당되는 용어인 '임차료'로 적정 표기하여 법정서류인 예산안과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35〉 세출예산중 임대료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실국	사업명	예산과목	'25년도 산출기초		'26년도 산출기초	
			연린터 임대료 지원 (시비)	6	연린터 임대료 지원(시비)	6
여성가족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연린터 임대료 지원 (시비)	6	연린터 임대료 지원(시비)	6
글로벌도시정책관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국제기구 교류협력 및 활동 지원	국제부담금	임대료 및 관리비 등	210	임대료 및 관리비 등	215
		국제부담금	국제기구 지원 (임대료등)	869	국제기구 지원 (임대료등)	433
비상기획관	사회복무요원관리	사무관리비	-	-	사회복무요원 근태 관리 단말기 임대료	2
경제실	서울시 제조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743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916
기후환경본부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무관리비	부지사용 임대료	21	부지사용 임대료	21
문화본부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 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설임대료	49	시설임대료	47
	신도림고등학교 복합화 정부 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설임대료	107	시설임대료	107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	사무관리비	송수신기 임대료	4	송수신기 임대료	4
관광체육국	여가스포츠 활성화	사무관리비	러너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임대료	14	러너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임대료	8
시민건강국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운영	사무관리비	사무공간 임대료 및 콜 시스템 사용료 등	402	사무공간 임대료 및 콜 시스템 사용료 등	410
디지털도시코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국제부담금	사무실 임대료	34	사무실 임대료	35
재난안전실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	사무관리비	박람회 부스 임대료	26	행사부스 임대료	31
미래공간기획관	편스태이션 운영·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	-	-	임대료	346
주택실	사회주택 공급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토지 임대료 지원	656	토지 임대료 지원	680
정원도시코	동물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방사장 정비 증장비 및 화물차량 임대료	7	방사장 정비 증장비 및 화물차량 임대료	7
	동물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방사장 정비 증장비 및 화물차량 임대료	5	방사장 정비 증장비 및 화물차량 임대료	5
			조류사 방사장 위험물 제거를 위한 장비 임대료	2	조류사 방사장 위험물 제거를 위한 장비 임대료	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등 재구성

○ 둘째, 민간위탁금의 산출내역 구체적 기재 필요

- 제출과목인 민간위탁금은 시의회로부터 이미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금의 규모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검토하게 되는 바, 민간위탁금의 산출기초(부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위탁금의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만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편성 요청된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일례로 **서울 패션 허브운영**의 경우, '25년 9월 26일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를 이행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금 내역에는 디자이너-봉제업 일감 연계 플랫폼 구축비를 증액(2억 4,000만원)하였다고만 작성하고 있어 민간위탁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정보화 사업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에도 관련 조례는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한 바,
-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는 민간위탁이 재계약인지, 재위탁인지 또는 중요사항 변경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인지 등 사업별설명서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시설형 위탁사무의 경우, 건물 임차료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에도 민간위탁 사무유형을 시설형, 사무형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을 위해 편성요청된 임차료 등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인지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사무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36A〉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안)	산 출 근 거	자 료 근 거
건강증진 사업관리	○ 민간위탁금 = 286,941천원 - 서울시 건강증진사업 관리 운영		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 255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2,947,749천원 - 인건비 = 1,735,947천원 - 운영비 = 485,300천원 - 사업비 = 726,502천원		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 461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 민간위탁금 = 3,066,761천원 - 인건비 = 2,051,124천원 - 운영비 = 406,771천원 - 사업비 = 608,866천원		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 491
서울패션허브 운영	○ 민간위탁금 = 5,133,943천원 - 인건비 = 1,159,970천원 - 운영비 = 1,389,639천원 - 사업비 = 2,584,334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06
하이서울쇼룸 운영	○ 하이서울쇼룸 운영 = 1,039,615천원 - 인건비 = 538,261천원 - 운영비 = 125,801천원 - 사업비 = 213,655천원 - 일반관리비 등 = 161,898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11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제2서울핀테크랩 인건비 = 376,086천원 ○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비 = 95,369천원 ○ 제2서울핀테크랩 사업비 = 294,753천원 ○ 이윤 등 = 38,187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310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 서울주얼리지원센터(1,2관) 운영 = 1,268,619천원 - 인건비 = 448,793천원 - 운영비 = 147,690천원 - 사업비 = 672,136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66

※ 자료근거 : '2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표 2-136B〉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안)	산 출 근 거	자 료 근 거
여성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보자애원 운영 = 5,049,85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4,598,695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429,108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 = 22,050천원 ○ 여성보호센터 운영 = 2,871,472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2,690,729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167,55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 = 13,190천원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 213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 1,548,89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818,744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109,94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경찰 파견사업 포함) = 156,110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종사자 처우개선비 = 464,096천원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 657
건강증진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 = 286,941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서울시 건강증진사업 관리 운영 = 286,941천원 		시민건강국 사업별설명서 p. 255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플라자 민간위탁 = 3,909,150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2,306,849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1,099,301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 = 353,000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일반관리비 등 = 150,000천원 		복지실 사업별설명서 p. 312
하이서울쇼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서울쇼룸 운영 = 1,039,615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538,261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125,801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 = 213,655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일반관리비 등 = 161,898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12
서울핀테크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핀테크랩 운영 = 1,404,609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569,986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167,996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 = 585,34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이윤 등 = 81,284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304
서울패션허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패션허브 운영 = 5,133,94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1,159,970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1,389,639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 = 2,584,334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05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얼리지원센터(1,2관) 운영 = 1,268,619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인건비 = 448,793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운영비 = 147,690천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사업비 = 672,136천원 		경제실 사업별설명서 p. 465

※ 자료근거 : '2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셋째,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 기재 필요

-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 중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이행한 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24년도, '25년도에 이어 '26년도에도 사업별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업내용 없이 출연금 총액만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 특히, 공공위탁의 확대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성격상 구분됨에도 위탁이나 출연의 근거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는 사례가 있음
- 출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별 예산액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출연금 예산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출연금의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위원회가 지난 '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37〉 출연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자 료 근 거
120 다산콜재단 출연금	32,250,067	30,750,395	홍보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72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47,206,863	46,649,958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55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22,605,583	21,586,985	문화본부 사업별설명서 p.60
서울시복지재단 운영	78,191,623	73,934,393	복지실 사업별설명서 p.131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8,009,307	17,239,141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4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재구성

○ 넷째, 예산안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 대한 현실화 필요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출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의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투자심사, 학술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 이행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공유재산과 민간위탁 심의 절차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내부 절차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원화됨에도 사업별 설명서의 사전절차 이행 양식은 각각의 절차 이행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 결과, 사업 담당자가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정보는 결국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사업별설명서 양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국비 교부 예산의 보조율 명확화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제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설명서 등을 작성할 때 당해연도 예산액에 보조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6년도 예산안 중 국비 등 보조재원이 있는 사업임에도 국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바,
- ①국비 분담 사업의 경우, 분담 비율과 정확한 소요액을 작성하고, ②지방채 등의 재원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바대로 지방채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별 소요재원의 구성과 변동 사유를 의회가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시간에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공기업특별회계

1) 수도사업특별회계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8,834억 1,800만원, ②지출 6,680억 3,7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2,165억 8,100만원 ②지출 4,319억 6,2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1조 1,00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39〉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1,100,000	1,100,000
사	업 예 산	883,418	668,037
자	본 예 산	216,581	431,962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서(안)」, p.23 “2026년도 예산총괄”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총규모는 1조 1,000억원으로 '25년도 본 예산(1조 300억원)보다 6.8%, 700억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유보자금**중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본예산(1,116억 5,500만원)보다 △28.9%, △323억 1,200만원 감액된 79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자산처분**은 861억 8,900만원이 순증되고, **자본잉여금수입**은 금년도 본예산(140억 3,400만원)보다 72.7%, 102억 400만원 증액된 24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수입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표 2-140〉 202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률
총	계	1,100,000	1,030,000	70,000				6.8
	상수도사업수익	883,418	881,847	1,570				0.2
	영업수익	845,643	846,229	△586				△0.1
	상수도사용료수익	823,473	820,909	2,563				0.3
	급배수공사수익	19,313	22,099	△2,785				△12.6
	기타영업수익	2,856	3,219	△363				△11.3
	영업외수익	37,775	35,618	2,156				6.1
	이자수익	4,414	5,731	△1,317				△23.0
	타회계전입금수입	26,173	23,308	2,865				12.3
	기타영업외수익	7,187	6,578	608				9.3
	자본적수입	216,581	148,152	68,429				46.2
	투자자산처분	86,189	-	86,189				순증
	예탁금원금회수수입	86,189	-	86,189				순증
	유형자산처분	7,561	5,355	2,206				41.2
	재산매각수입	7,561	5,355	2,206				41.2
	자본잉여금수입	24,239	14,034	10,204				72.7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484	△484				순감
	원인자부담금수입	24,239	13,550	10,688				78.9
	유보자금	98,590	128,762	△30,171				△23.4
	잉여금	79,343	112,339	△32,996				△29.4
	순세계잉여금	79,343	111,655	△32,312				△28.9
	보조금사용잔액	-	684	△684				순감
	미수금	19,247	16,422	2,825				17.2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서(안)」, p.25 “세입예산 목별구성” 재구성

- 수도권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지출은 1조 1,000억원으로 '25년도 (1조 300억원)보다 6.8% 70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유형자산취득**은 '25년도(2,925억 8,800만원)보다 12.3%, 361억 2,600만원 증액된 3,28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고,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은 '25년도(410억 8,000만원)보다 84.7%, 347억 9,400만원 증액된 75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임
- 수도권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 바, 수도권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사업예산(경상사업) 예비비 85억 3,000만원, (2)자본예산(투자사업)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다만, 수도권사업특별회계와 같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6년도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1조 1,000억원)의 1.4%, 150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일반예비비는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1조 1,000억원)의 1.0%인 11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40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41〉 2026년도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예산안)		2025년도(본예산)		증 감	
		%		%		%
계	1,100,000	100.0	1,030,000	100.0	70,000	6.8
상 수도권사업비용	668,037	60.7	661,887	64.3	6,150	0.9
영업비용	658,541	59.9	653,934	63.5	4,606	0.7
영업외비용	965	0.1	967	0.1	△1	△0.2
예비비 (경상사업)	8,530	0.8	6,985	0.7	1,544	22.1
자본적지출	431,962	39.3	368,112	35.7	63,850	17.3
유형자산취득	328,714	29.9	292,588	28.4	36,126	12.3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4,716	0.4	4,560	0.5	155	3.4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5,874	6.9	41,080	4.0	34,794	84.7
기타자본적지출	16,156	1.5	26,883	2.6	△10,726	△39.9
예비비 (투자사업)	6,500	0.6	3,000	0.3	3,500	116.7

※ 자료근거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서(안)」 재구성

□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별설명서 p. 93)

- 동 사업은 노후화된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8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252억 5,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편성요청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78억 7,900만원)중 전기차 구매비용(1억 6,800만원)을 포함한 2억 1,800만원을 수탁자산취득비로 편성요청한 바,
 - 동 사업내용은 자본형성적 경비로 사료됨에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적정 예산과목인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42〉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25,256
특 정 업 무 경 비				72
◦ 특정업무경비				72
사 무 관 리 비				25
◦ 수도계량기 교체용 소모품				25
시 책 업 무 추 진 비				4
◦ 수도자재 구매 등 업무추진				4
급 수 계 량 기 교 체 비				16,285
◦ 수도계량기 구매(301,081개)				15,633
◦ 수도계량기 부속자재(160,150개)				651
배 상 금 등				0.6
◦ 손해배상보험 자기부담금				0.6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 상 적 위 탁 사 업 비				7,879
◦ 인건비(직원 보수)				3,814
◦ 퇴직급여				456
◦ 일반운영비				1,556
◦ 여비				10
◦ 직무수행경비				1
◦ 수선유지교체비				65
◦ 관서운영비				9
◦ 평가급				749
◦ 연금부담금				622
◦ 배상금				3
◦ 수탁자산취득비(전기차 6대, 16,800만원)				218
◦ 포상금				1
◦ 간접관리비				361
임 차 료				10
◦ 동절기 계량기 교체차량 임차				10
공 공 운 영 비				980
◦ 동파예방 및 고장 계량기 교체 등				98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사업예산은 ①수입 9,561억 3,300만원, ②지출 5,530억 8,800만원으로 계획하고, (2)자본예산은 ①수입 638억 7,000만원, ②지출 4,669억 1,400만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3)예산총계의 수입지출은 1조 200억 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43〉 2026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예 산 총 계	1,020,003	1,020,003
사 업 예 산	956,133	553,088
자 본 예 산	63,870	466,914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서(안)」, p.15 “예산총괄표” 재구성

-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계획하지 않고, 일시 차입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한정하여 제출되었음
- '26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 총규모는 1조 200억 300만원으로 '25년도 예산액 9,101억 1,200만원보다 12.1%, 1,098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 수입예산의 경우, **사용료수익중** 일반용하수도사용료가 '25년도(4,758억 2,200만원)보다 543억 5,100만원 증가하고, 가정용하수도사용료가 '25년도(2,722억 8,300만원)보다 432억 4,300만원 증가하는 등 총 사용료수익은 '25년도(7,564억 1,800만원)보다 13.1%, 990억 3,300만원이 증액된 8,55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26년도 수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26년도 수입예산에는 '25년도에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순세계잉여금은 '25년도 결산이후 다음연도 추경재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44〉 2026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증 감	증 감 륜
총	계	1,020,003	910,112	109,891	12.1
	사업수익	956,133	841,136	114,996	13.7
	영업수익	920,401	813,745	106,655	13.1
	사용료수익	855,451	756,418	99,033	13.1
	기타영업수익	64,949	57,327	7,622	13.2
	영업외수익	35,732	27,390	8,341	30.5
	이자수익	10,435	9,321	1,114	12.0
	타회계전입금수입	22,414	15,489	6,925	44.7
	기타영업외수익	2,881	2,580	301	11.7
	자본적수입	63,870	68,975	△5,105	△7.4
	자본잉여금수입	47,239	52,218	△4,978	△9.5
	시설분담금수입	45,919	50,609	△4,690	△9.3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195	△195	순감
	공사부담금수입	1,217	1,414	△196	△13.9
	보조금등반환금수입	103	-	103	순증
	유보자금	16,630	16,757	△126	△0.8
	미수금	16,630	16,757	△126	△0.8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서(안)」, p.16~17 “수입예산 총괄표” 재구성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총계에 따른 '26년도 지출은 1조 200억 300만원으로 전년도(9,101억 1,200만원)보다 1,098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사업예산**은 전년도(5,348억 9,400만원)보다 2.0%, 181억 9,400만원 증액된 5,530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은 전년도(3,752억 1,700만원)보다 10.1%, 916억 9,700만원 증액된 4,669억 1,400만 원을 편성한 것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에 자율성을 두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 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1)사업예산(경상사업) 예비비 5 억원을 편성하고, (2)자본예산(투자사업)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145〉 2026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증 감	
계	1,020,003	100.0	910,112	100.0	109,891	12.1
사업예산	553,088	54.2	534,894	58.7	18,194	2.0
하수시설 관리(사업)	86,031	8.4	103,477	11.4	△17,446	△1.9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204,920	20.0	187,383	20.6	17,537	1.9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121,577	11.9	108,552	11.9	13,025	1.4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사업)	79,681	7.8	76,530	8.4	3,151	0.3
행정운영경비 (물재생계획과)	7,124	0.7	6,931	0.8	193	0.0
행정운영경비 (물재생시설과)	76	0.0	75	0.0	1	0.0
행정운영경비 (중량물재생센터)	15,556	1.5	16,415	1.8	△859	△0.1
행정운영경비 (난지물재생센터)	12,255	1.2	12,527	1.4	△272	△0.0
재무활동	25,365	2.5	22,500	2.5	2,865	0.3
예비비(사업)	500	0.0	500	0.0	-	-
자본예산	466,914	45.8	375,217	41.2	91,697	10.1
하수시설 관리(자본)	313,701	30.8	300,075	33.0	13,626	1.5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	113,651	11.1	43,476	4.8	70,175	7.7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7,510	1.7	18,688	2.1	△1,178	△0.1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자본)	10,832	1.1	11,265	1.2	△433	△0.0
재무활동	10,276	1.0	225	0.0	10,051	1.1
재무활동 (물재생시설과)	795	0.1	1,341	0.1	△546	△0.1
예비비(자본)	147	0.0	147	0.0	-	-

※ 자료근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서(안)」, 재구성

□ 분뇨처리시설 적정 처리용량 타당성 조사 및 운영개선 용역 (사업별설명서 p.983)

- 동 사업은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용량을 산정하고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7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표 2-146〉 소요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산	출	내	용	예산안
계				700
시	설		비	700
	◦ 분뇨처리시설 적정 처리용량 타당성 조사 및 운영개선 용역			700

- 동 사업은 추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 분야에 해당되어 지난 10월 24일,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신청하여 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내역서 보완 요청에 따라 11월 3일 설계내역서를 보완하고 재신청하여 예산안이 시의회 제출('25.10.31)된 이후인 '25년 11월 4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에는 기술용역은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편성하려는 기술용역성 경비가 타당한 것인지, 용역비 산정은 적정한 것인지 등이 심사되어야 함에도 예산안을 이미 시의회에 제출할 시점이 되어서 편성전 사전절차로 정하고 있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의결과 또한 예산안 제출 이후 통보 받은 사례인 바,

- 사업부서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으나 단순절차로 인식하여 가벼이 생각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시기와 심사결과 인용 시점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25.10.31)한 이후 예산편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적절한 것으로 향후에는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